

DJDI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방안 연구

박노동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과 실태 및 지원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평생교육 모델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이 경험하는 특수한 불이익과 사회·문화적 배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에 대한 개념 및 논의 정리
- 현재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전광역시, 민간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관련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 대전광역시 거주 장애인과, 관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 실태, 필요욕구,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고, 향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적 방향성 및 지원방안 도출
-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이론적 검토, 외국 사례조사,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지원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 및 실행방안 제언

2.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평생교육에 대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
-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고도 산업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습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 검토 후 공통적인 시사점 도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제도의 정착 필요
 -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필요
 - 정부 뿐만아니라 지역단위에서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교환 필요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목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사의 양성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통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실태

- 국내의 평생교육은 정부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하에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법률상 명시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대전시는 2011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며, 향후 지역내 산재된 평생교육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현재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으로 파악되었으며, 기관간 연계 또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이 법률 제33조는 각급학교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환경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 법률이 시행되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의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만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사례

-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통합과 지역사회참여라는 가치아래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보다는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한 내용보다는 일반인의 평생교육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생활능력과 직업능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관련 기관만의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풍토와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함
-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
- 통합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함

■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 대전광역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실태와 지원요구를 조사한 결과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1회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86.0%,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14.0%로 나타남
-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28.8%, 평생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26.0%,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0.2% 순임
-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 장애인 단체 32.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 21.4%, 일반인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각각 14.3% 순으로 나타남
-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직업교육 48.3%, 여가교육 31.0%, 정보교육 27.6%, 문해교육 20.7%, 자립생활 17.2%, 교양교육 10.3% 순임
- 본인이 부담한 월 교육비는 무료 53.6%, 월 5-10만원 미만 17.9%, 월 10-15만원 미만 10.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80.0%,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기관의 부족 66.7%, 이동의 어려움 46.7%,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36.7%, 강사의 전문성 부족 26.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 20.0%, 교육비 부담 13.3% 순임
- 희망하는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형태는 혼합형태 47.6%, 장애성인만을 대상으로 26.4%, 일반인과 함께 23.6% 순으로 나타남
- 받고 싶은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립생활 78.4%, 직업교육 54.3%, 문해교육 36.1%, 정보교육 35.1%, 여가교육 32.2% 순임
-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1년 이상 38.5%, 6개월 이상-1년 미만 32.7%로 나타남
- 프로그램의 주당 운영횟수는 3회 40.9%, 2회 27.4%, 5회 19.2%, 4회 7.7% 순임
- 1일 운영시간은 3시간 29.2%, 2시간 26.8%, 1시간 14.4%, 4시간 10.5% 순임
- 월 교육비 부담액은 무료 44.7%로 가장 많았고, 월 5만원 미만 33.5%, 월

5-10만원 미만 13.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별 희망하는 강사 소지자격으로, 문해교육은 교사 48.7%, 직업교육은 국가기술자격 33.7%, 교양교육은 교사 32.6%, 정보교육은 국가기술자격 46.1%, 여가교육은 사회복지사 42.6%, 자립생활은 사회복지사 47.7%로 나타남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여부는 필요하다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에서 수행되어야할 기능으로 장애특성별 프로그램 수집 개발 보급 75.3%로 가장 많았고, 교수학습 자료 수집 개발 보급 57.2%, 장애평생교육 인식변화 홍보 50.0%,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 48.5%,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 35.6%, 지역사회내 요구조사 28.9% 순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평생교육기관 91.1%가 장애인 관련 교육강좌가 없다고 응답
- 관련 교육강좌가 있는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월평균 10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관련교육강좌를 운영하는 18개 기관 중 장애인관련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기관이 66.7%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반적으로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장애인 교육의 취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

○ 장애성인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혼합형태 81.3%, 장애성인만 대상으로가 12.5%, 일반인과 함께가 6.3%로 나타남
-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직업교육 93.8%, 여가교육 68.8%, 자립생활 56.3% 순으로 나타남
- 직장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년 이상이 37.5%, 6개월-1년 미만

31.3%, 3-6개월 미만이 25%, 3개월 미만 6.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주당 운영횟수는 2회 43.8%로 가장 선호하였고, 3회 4회 5회가 각각 18.8%로 동일하게 나타남
- 1일 운영시간은 2시간이 7개 기관으로 43.8%로 가장 선호하였고, 3시간 31.3%, 4시간 18.8%, 5시간 6.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이 부담해야 할 월 교육비로는 월 5만원 미만 12기관(75.0%)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무료 25.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75.0%,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확대 설치 68.8%,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 62.5%, 강사의 전문성 확보 43.8%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여부는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100%로 나타났고, 이 기관에서 수행되어야할 중점기능으로 애 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개발 및 보급 68.8%, 장애 특성별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이 각각 62.5%,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43.8% 순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뿐만아니라, 대전광역시 관련기관간 보다 광의적 차원의 평생교육의 목적 실현과 ‘장애’ 라는 특수목적 대상인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들의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토록 함
- 건립이 필요한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광범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성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하며, 충분한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치 절차 마련

○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조례) 제정

-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장애인평생교육 전담기구로 설치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은 직접 프로그램 운영, 중계업무, 지원업무, 협력 업무 등 크게 4가지의 역할을 담당
- 장애인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제공

-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필요
-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고 그 기능적 특성을 확인한 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 마련
- 사정 절차 (Assessment Process)를 담당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 평생교육 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또는 특수교사를 양성 배치

○ 장애인 평생교육 비용의 지원 및 지불방식 개선

- 직접 바우처 제공방식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 또는 현금을 지급하여 이것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안
- 간접(목시적) 바우처 제공 방식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

에 직접 비용일 지불하는 방안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이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도록 장려
-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인건비(강사비), 사업비 등 충분한 예산 지원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관리 업무 및 전달체계 정비

- 교과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청의 장애인평생교육 업무 체계의 정비가 필요
- 시교육청, 시청 어느 일방의 전담업무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의 체계적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목 차 -

제 1 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평생학습의 개념 13
제2절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2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검토 29

제 3 장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반 분석 37
제1절 일반 평생교육지원 37
제2절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46

제 4 장 해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73
제1절 미국의 사례 73
제2절 일본의 사례 84

제 5 장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93
제1절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93
제2절 일반 평생교육관련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분석 115
제3절 장애성인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요구도 분석 122

제 6 장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141
제1절 지원체계 구축 141
제2절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155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63
제2절 정책 제언 164

참 고 문 헌 168

부록 171

- 표 목 차 -

<표 I-1> 연구 주제 및 세부내용	7
<표 I-2> 장애인대상 설문내용	8
<표 I-3>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지 구성내용	9
<표 I-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지 구성내용	10
<표 II-1> 지역평생학습의 주체와 목표	16
<표 II-2> 추진전담기구별 역할	18
<표 II-3> 광역 시도 평생교육 담당조직 현황	22
<표 III-1> 평생교육법의 구성 체계	38
<표 III-2>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 추진 체계	40
<표 III-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41
<표 III-4>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43
<표 III-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관련 조항	57
<표 III-6>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부문 협의사항(장애인교육권연대)	60
<표 III-7>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61
<표 III-8> 민간 주도의 장애성인 문해 교육 지원 시설의 유형 및 현황	65
<표 III-9> 장애인성인교육 연도별 소요예산(추정)	67
<표 III-10>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지원사업 현황	68
<표 III-11>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69
<표 III-12> 대전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 수행기관별 운영내용	70
<표 IV-1> Duckworth School과 Lab School의 특징 비교	74
<표 IV-2> New Horizons의 전환지원 프로그램	77
<표 IV-3> New Horizons의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77
<표 IV-4> New Horizons의 주거생활지원 프로그램	78
<표 IV-5> CEL의 주요 프로그램	81
<표 IV-6> BARC의 직업·작업 활동 프로그램 세부내용	83
<표 V-1> 장애유형별 구성 1	93
<표 V-2> 장애유형별 현황	93
<표 V-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94

<표 V-4> 장애유형별 성	94
<표 V-5> 장애유형별 연령	95
<표 V-6>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참여 여부	96
<표 V-7> 성인교육 참여여부	96
<표 V-8>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97
<표 V-9> 성인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98
<표 V-10>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받은 기관(다중응답)	99
<표 V-11> 성인교육 받은 기관(다중응답)	99
<표 V-12>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참여 프로그램(다중응답)	100
<표 V-13> 성인교육 참여 프로그램(다중응답)	100
<표 V-14> 성인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	101
<표 V-15> 성인교육 프로그램 참여 횟수	101
<표 V-16> 성인교육 프로그램별 참여기간	102
<표 V-16> 성인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간	102
<표 V-18> 장애유형별 교육비 부담 액수	103
<표 V-19> 교육비 부담 액수	103
<표 V-20>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104
<표 V-20>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104
<표 V-22>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선점(다중응답)	105
<표 V-23>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선점(다중응답)	105
<표 V-24>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106
<표 V-25> 프로그램 운영 형태	106
<표 V-26> 장애유형별 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다중응답)	107
<표 V-27> 받고 싶은 프로그램(다중응답)	107
<표 V-28> 장애유형별 강좌당 희망하는 운영 기간	108
<표 V-29> 프로그램 운영기간	108
<표 V-30>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주당 횟수	109
<표 V-31> 프로그램 1강좌 주당 횟수	109
<표 V-32>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1일 운영시간	110
<표 V-33> 1일 운영시간	110
<표 V-34>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교육비 부담액	111
<표 V-35> 월 교육비 부담액	111
<표 V-36> 성인교육 프로그램별 희망하는 강사 소지자격	112
<표 V-37> 장애유형별 장애성인교육 전문기관설립 여부	113

<표 V-38>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113
<표 V-39> 장애유형별 장애성인교육 전문기관의 중점 수행기능(다중응답)	114
<표 V-40> 장애성인교육 전문기관의 중점수행 기능(다중응답)	114
<표 V-41> 조사대상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	115
<표 V-42> 조사대상 평생교육 기관의 소재지	116
<표 V-43> 장애인관련교육 강좌수	117
<표 V-44> 장애인 관련교육 월평균 수강인원	118
<표 V-45> 장애인 관련교육 월평균 수강료	119
<표 V-46>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기관유형 별)	120
<표 V-47>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기관분류 별)	120
<표 V-48>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소재지 별)	121
<표 V-49> 주요대상 기관별 운영 주체	122
<표 V-50> 수강생 연령	123
<표 V-51> 수강생 규모	124
<표 V-52> 수강생 장애유형(다중응답)	124
<표 V-53> 시설운영 형태	125
<표 V-54> 장애인 편의시설(다중응답)	126
<표 V-55> 프로그램 운영내용(다중응답)	126
<표 V-56> 프로그램 1강좌 운영기간	127
<표 V-57> 프로그램 1강좌 1일 운영시간	127
<표 58> 수강생 1인당 월 교육비	128
<표 V-59> 프로그램 담당 강사인원	128
<표 V-60> 강사 소지자격(다중응답)	129
<표 V-61>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방법	129
<표 V-62> 프로그램 운영시 어려운 점(다중응답)	130
<표 V-63>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형태	131
<표 V-64>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다중응답)	132
<표 V-65> 프로그램 1강좌당 적절한 운영기간 요구	132
<표 V-66> 주당 적절한 운영 횟수	133
<표 V-67> 1강좌당 적절한 1일 운영시간	133
<표 V-68> 적정 교육비	134
<표 V-69> 문해교육강사 소지자격	134
<표 V-70> 직업교육강사 소지자격	135
<표 V-71> 교양교육 프로그램강사 소지자격	135

<표 V-72> 정보교육강사 소지자격	135
<표 V-73> 여가교육강사 소지자격	136
<표 V-74> 자립교육프로그램강사 소지자격	136
<표 V-75> 장애인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137
<표 V-76> 장애인성인교육 전문기관의 중점수행 기능(다중응답)	138
<표 VI-1> 프로그램개설과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방안 장, 단점 비교	148
<표 VI-2>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152
<표 VI-3> 대전광역시 소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153

- 그림 목 차 -

<그림 II-1> 평생학습 추진체제	19
<그림 VI-1>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모형	142
<그림 VI-2> 다양한 기능의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모델	144
<그림 VI-3> 장애인평생학습관 조직도(안)	151
<그림 VI-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정 절차	156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80년 중반 이후 평생학습은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어 왔으며, 2000년 3월에 제정된 「평생교육법」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 추진됨(장원동 외, 2008).
- 지자체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들이 개발, 확대됨
 - 2011년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부설형태 평생교육시설 15개소, 원경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7개소,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13개소,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9개소, 언론기관부설 5개소,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10개소, 평생학습관 16개소, 주민자치센터 81개소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운영
- 평생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대상자로서 장애인은 오랫동안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됨
 -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서비스 제공은 매우 미미한 수준(정인숙 2001; 여수일 2005; 박성숙 2005)
- 2007년 이후 지역사회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권 문제가 한국의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적 의제로 부각됨
 - 지역사회의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정책마련을 꾸준히 요구
 -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난 2007년 「장애인 등

- 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서 마련됨
 - 이 법률 제33조는 각급학교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환경이 구축됨
- 하지만 법률 시행 이후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은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논의로 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장애인이 참여할 프로그램 또한 거의 없으며, 평생교육 지원방안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언제나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할 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을 더욱 심한 정보의 소외·지식의 소외·인간적 소외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함
 -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장애인이 일반인과 구별됨이 없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여 만족할만한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인식
 -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및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방향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
 - 대전광역시는 타시도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 수범도시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음
 - 현 단계에서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동시에 마련해 두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수행코자 함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평생교육 실태와 지원 욕구 파악
 -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지원제도 및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
 -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 및 실행방안 제안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장애인이 경험하는 특수한 불이익과 사회·문화적 배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에 대한 개념 및 논의를 정리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검토
 -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과 주요 정책 내용 검토
 - 향후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 파악
- 장애인 당사자, 가족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및 분석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필요요구, 개선 방안 파악
 - 향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책적 방향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검토
 -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포함 하여 검토
 -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환 및 평생교육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분석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 이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함의 도출
- 이론적 검토, 실태 분석, 외국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지원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방안 제시

〈표 1-1〉 연구 주제 및 세부내용

연구 내용	세 부 내 용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평생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 검토
국내 현황 분석	· 국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 및 정책동향 분석
해외 사례조사	· 국외의 장애인 평생, 전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서비스 내용 분석 ·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가능성, 방법 등 정책적 함의 도출
실태 조사	· 대전광역시 장애인이 경험하는 평생교육 실태와 지원욕구 분석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지원방안 제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개선방안 제안 · 신규 서비스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모색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및 실행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1)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 및 요구조사

- 대전광역시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대전맹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대전원명학교, 대전혜광학교, 대전장애인체력관, 대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
 - 설문지 총 배부 부수는 380부였으며, 회수부수는 290부임
 - 조사는 장애인복지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관 담당자를 설문조사원으로 교육 후 면접자로 활용하여 조사함

- 이 조사의 설문 응답은 본인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본인이 설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 설문지¹⁾는 응답자의 기본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사항 7문항, 평생교육 실태 영역에서 일상생활영역 3문항, 직업생활영역에서 3문항, 교육영역에서 9문항, 평생교육 요구 영역에서 교육영역 9문항으로 구성함
- 구체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음

〈표 1-2〉 장애인대상 설문내용

조사 영역		하위조사 영역
일반사항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거주지, 최종졸업학력
평생교육 실태	일상생활	주거형태,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 주는 사람, 일상생활 소요 경비 제공자
	직업생활	직업형태, 본인의 월 소득, 월 소득 만족도
	교육	평생교육 참여여부, 참여하지 않은 이유, 참여 프로그램내용, 프로그램별 참여 총 횟수, 프로그램별 회당 평균기간, 교육부담액, 교육받은 기관, 프로그램 만족도, 장애인 평생교육 개선점
평생교육 요구	교육	프로그램 향후 운영 형태, 받고 싶은 프로그램 내용, 강좌당 운영기간, 일주일에 강좌 당 참여횟수, 1일 운영시간, 월 교육비, 프로그램별 강사 소지자격, 장애인성인 전문기관설립 여부, 전문기관의 중점기능

1)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06)의 설문지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장애인성인 10명과 장애인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움을 받아 응답하는 경우에 장애인성인 본인의 입장이 아닌 설문응답을 도움을 주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설문지에 사용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응답자 항목을 첨가하였고, 각 문항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여 수정하였다.

(2) 평생교육관련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

- 본 연구는 평생교육관련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2010년 대전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2차 분석을 수행함
- 본 조사는 대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매년 연차별로 수행하는 것으로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은 설문요원 10명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자를 만나 관련 공문과 함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 2일부터 2010년 12월 12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02개로 회수율은 90.6%임
- 대전시의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실태, 인적자원, 교육시설 및 장비, 기관의 행·재정실태, 교육네트워크 현황,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됨
-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 -3>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지 구성내용

조사 영역		하위조사영역
일반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설립·운영주체, 수강대상
운영현황	직원현황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인원
	운영재원	운영재원
	교육인원	월평균 교육인원
	수강료	월평균 수강료, 수강료 형태
	운영유지비	지출항목
	홍보	홍보매체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실태	개발방식	프로그램 개발방식, 학습자요구분석, 학습자 만족도 조사 실시, 강의평가, 시장조사, 프로그램 운영 의견 교환
	교육내용	각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강좌수, 강좌당 월평균 수강인원, 강좌당 월평균 수강료, 주대상, 시간당 강사료
요구사항		예산·재정, 시설·장비, 인력관리, 지역사회 내 타 기관간 협력 및 연계,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관련기관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평생교육관련기관의 운영 실태 및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 실시
- 대전맹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대전원명학교, 대전혜광학교, 대전장애인체력관, 대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6개 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
- 설문지는 평생교육관련기관의 일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사항 6문항, 평생교육 실태 영역에서 11문항, 평생교육 요구 영역에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 -4>와 같음

<표 I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지 구성내용

조사 영역	하위조사 영역
일반사항	주요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관 운영 주체, 주요대상연령, 수강생 전체규모, 수강생 장애유형,
평생교육 실태	시설형태, 편의시설 설치 현황, 프로그램 주요내용, 1강좌 운영기간, 1강좌 하루 운영시간, 월 교육비 부담액, 강사인력 수, 강사소지자격, 프로그램 개발 방법, 기관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운 점, 최근 1년간 장애성인 참여 여부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 요구	프로그램 향후 운영 형태, 받고 싶은 프로그램 내용, 강좌당 운영 기간, 일주일에 강좌 당 참여횟수, 1일 운영시간, 월 교육비, 프로그램 별 강사 소지자격, 장애인평생교육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장애성인 전문기관설립 여부, 전문기관의 중점기능

2) 자료처리

- 본 조사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평생학습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고 문항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문항간 반응차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기관의 운영실태 및 지원요구를 조사하고 문항별 빈도 분석을 실시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평생학습의 개념

제2절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검토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평생학습²⁾의 개념

1.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위

-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모든 경험의 변화와 내적으로 통일성과 전일성(holistic)을 획득하는 전 생애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1970년대 : “성인에게 교육기관에서의 형식적 과정을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
 - 1996년 이후 : 보다 포괄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 생애에 걸쳐 지식과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모든 의도적 학습활동” 으로 정의
 - 모든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전 사회적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수행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관리해 가는 과정
- 평생교육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자기 갱신과 사회적 적응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 초기교육, 성인 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 + 가정교육 + 조직화되지 못한

2) 용어의 개념상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조직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사실상의 구분의 실익은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임. 특히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보면 사실상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경계를 두지 않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도 특별히 양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둠.

- 체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의 통합 강화라는 측면
-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새로운 교육으로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
- 평생교육의 대상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은 “학교교육”을, “평생교육”은 “학교 밖 교육”을 1차적인 고려 대상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으로 정의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명시
- 평생교육의 이념은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평생교육법 제4조)
 - 평생교육의 이념에는 인본주의, 교육 평등, 교육복지의 실현, 교육의 민주화 등의 내용이 내포
-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의무(평생교육법 제5조)를 명시함.
 - 평생교육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지역 문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평생교육은 성인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동안 성인교육³⁾, 계속교육⁴⁾, 연장교육⁵⁾, 지역사회교육⁶⁾, 순환교육⁷⁾, 생애교육⁸⁾, 사회교육⁹⁾이라는

3)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은 자질의 향상, 자기충족 및 건전한 사회적 관계의 증진,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 학교의 청소년 및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초 및 보충교육, 직업·기술·전문교육, 건강·복지·가족생활교육, 시민생활교육, 자기실현 교육 등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활동이다.(이영호, 2004)

4)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

다양한 차원의 교육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음

-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무덤에 이르는 생애에 걸친 교육과 개인 및 사회전체 교육의 통합임(이영호, 2004)
-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혹은 시간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수평적 혹은 공간적 차원)의 통합’ 이라고 할 수 있음(김중서 외, 2000: 2, 재인용)

2 지역평생교육의 의미와 방향

- 평생학습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고 성취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고 활동이며, 따라서 평생학습은 지역을 토대로 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평생학습의 주체와 목표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 내적인 발전과 외적인 발전으로 4분화된 접근방법으로 도출 가능

에게 있어서 일정한 연령층에만 가능했던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난 후, 사회적 요청에 의해 성인이 도어 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자신의 능력 고양이나 자아 성취의 만족을 위하여 교육적 욕구가 생성되어짐을 고려할 때 성인들에게 계속해서 배움의 기회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서 그리고 평생교육의 실천 일환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여가를 이용한 문화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성인교육을 실시한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이영호, 2004)

- 5) 연장교육(further education)은 제1차 교육주기를 완료하였거나 중단한 자가 제2차 교육주기의 단계를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에 의하여 학교 및 학교 외 교육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과 이해와 기력과 태도의 변화를 갖게 하는 계설성이 있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이영호, 2004)
- 6) 지역사회교육(communitary education)은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받아들여 봉사한다는 개념을 지닌 용어로서 지역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아실현을 돕고자 하는 사회교육활동 체계를 말한다.(이영호, 2004)
- 7)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이란 제도적 교육기관의 학교와 생활현장인 사회와의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추구하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는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는 의미의 교육활동이다.(이영호, 2004)
- 8) 생애교육(career education)이란 개인이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선택·준비·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취학 전 교육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경험의 총체를 뜻한다.
- 9)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성인교육, 계속교육, 연장교육, 순환교육, 생애교육, 지역사회교육의 의미를 포괄하는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교육법 제2조 제1항에는 사회교육을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호, 2004)

- 개인의 내면적인 접근에서 배움의 의미와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기능 수행
- 개인의 외면적인 접근에서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기능 수행
- 공동체의 내면적인 접근에서 공동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기능 수행
- 공동체의 외면적인 접근에서 공동체의 균형 속의 발전을 지향하는 기능 수행

<표 II -1> 지역평생학습의 주체와 목표

주체 \ 목표	개 인	공 동 체
내 면 적	배움, 정체성 인식	상호신뢰, 협력
외 면 적	삶의 질적 수준 제고	균형 속의 발전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지역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학습 파트너십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지역주도형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의 실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정보화, 지식기반화로 촉발된 글로벌화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 경쟁, 기업 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남
 - 더 이상 ‘중앙⇒지방’, 또는 ‘정부⇒기업’의 수직적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고 환경변화에 발 빠른 대응과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시대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의 당면 전략과제는 요소투입형 산업시대 성장전략 시스템을 충요소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신성장전략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함
 - 이러한 환경변화는 중앙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도여야 할 평생학습정책의 당위성을 보여줌
- 지역주도형 평생학습체계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평생학습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평생학습의 양적, 질적 성과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
 - 지역민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사업

의 양적, 질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진

- EU는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률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향상 및 고용문제 완화
 - 북유럽 국가들의 우수한 국가 경쟁력의 바탕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평생교육 추진 체제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 추진 규정

- 평생교육정책의 계획단계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을 명문화
 - 국가 수준에서는 교과부장관의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의무
 - 시도 차원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
- ※ 기본 계획에는 평생교육 진흥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
- 평생교육 협의 및 심의 기능의 강화
 - 국가 수준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 시도 수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지사가 의장이 되는 시도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 이를 통해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이어지는 협의회 기능의 강화

와 일반 행정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능을 강화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 기구의 운영 체제 강화

〈표 II -2〉 추진전담기구별 역할

구 분	중앙 차원	광역(시·도) 차원	기초(시·군·구) 차원
명칭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자	국가가 설립	시·도 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2원화 운영체제 - 교육감 지정·운영 - 지자체장 설치·지원
성격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전담 집행기관	광역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 전담기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주요 기능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광역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획·연구 조사, 지역의 평생교육정책 개발, 평가,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근거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평생교육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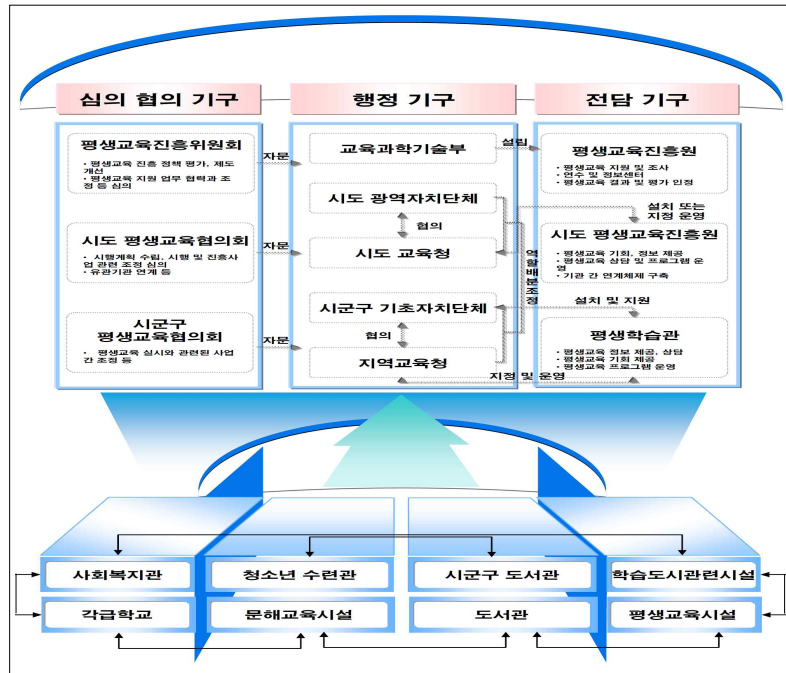
※ 출처 : 이희수 (2009).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 추진체제 개편. 「광역시도와 평생학습도시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평생교육진흥원. 수정작성.

-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결과의 인정,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를 독립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강화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 가능

- 기초자치단체에 주로 설치되는 ‘평생학습관’의 경우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 가능. 기초자치단체에 주로 설치되는 ‘평생학습관’의 경우,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추진 체제의 골격 완성

〈그림 II-1〉 평생학습 추진체제



※ 출처 : 2009 평생교육백서,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정책 지원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
-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의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 사업, 중앙 단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지역 단위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추진 도모 등이 예가 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 운영,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운영 등이 핵심 사무
-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 차원의 임무 : 공공 부문, 민간사업 부문, 사회봉사 부문 등 각 영역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시행,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 전담·지원 기관 설치·운영,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취득제 등 평생교육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성인교육 등 평생교육 과정 이수자의 평생학습 결과 인증 및 사회적 대우 부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 개발 사업 지원,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교육 담당자 및 관리자의 연수 교육지원 등
- 지역 차원의 임무 : 지역 주민의 학습비 및 연수 교육지원, 각급 학교 신축 시에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경비 등 지원, 여가 및 문화 교육, 문자해독교육 등 각종 평생교육과정 지원, 각

급 학교 및 단체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운동 지원, 청소년 및 여성·노인 등 성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비 지원, 영·유아 교육, 사회복지, 직업훈련 등에 학습비 지원 등 경비 보조, 공무원연수원, 구민회관, 문화원, 지역사회학교 등을 활용하여 각종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교육 실시 등

○ 조례 위임 사항의 예

- 시도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에 따른 기존 조례 폐지의 문제, 시·군·구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 사업 실시 및 지원을 위한 사항,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기관의 이용자 생명·신체상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사업 가입 등 안전 조치, 학교 시설의 개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학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등 지원 사항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 경비 지원,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2) 시도별 평생교육 추진조직 구축

○ 광역 시·도의 평생교육조직 역할에 대한 문제

- 광역시·도청에서 평생교육 전담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제주 등 7곳이며, 이들 부서에서도 평생교육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업무를 중복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평생학습 진흥 및 발전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외에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초·중·고 학교 지원 및 대학 지원 관리 업무, 문화예술, 교육 경비 지원, 영어마을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추진
-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정책이 같은 부서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음

〈표 II-3〉 광역 시·도 평생교육 담당조직 현황

구분	평생교육 업무 담당 조직명	조직인원 (전담인력)	조직의 주요 업무
서울특별시청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 평생교육 담당관	12(2)	평생교육 관련 업무 전반
부산광역시청	행정자치관 교육협력 담당관실 평생교육담당	3(3)	평생교육 관련 업무 전반
대구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 담당 교육학술팀	9(1)	지방문화예술의 발굴·육성, 지방대학 지원사업 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 진흥 등을 포함한 교육협력
인천광역시청	기획관리실 교육지원팀	6(1)	교육경비 지원, 영어도시(마을)운영, 학교급식 지원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3(1)	RHRD기반 구축, 교육청협력, 평생교육기반 조성
대전광역시청	기획관리실 국제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	4(4)	시·도 평생교육진흥정책 업무, 평생교육 인프라 및 기반 구축,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운영, 평생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울산광역시청	기획관리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평생교육팀	3(3)	평생교육 관련 총괄 업무
경기도청	교육국 평생학습과(기획/사업/e-러닝/외국어마을)	13(13)	평생교육진흥, 영어마을 관리
강원도청	기획관리실 교육협력 담당	4(1)	교육협력 업무, 대학유치업무 협력, 교육청 관련 업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등
충청북도청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	29(1)	도전 주요 업무 계획, 도의회 조정, 도 종합계획, 인재 양성 전략, 각급 교육기관 협력 교육 지원 및 교육 협력
충청남도청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 담당관 평생교육T/F팀	3(3)	평생교육 업무 전반 및 교육 협력 업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네트워크 지역인적자원 개발 업무
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인재양성과 인재양성담당	6(3)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전반
전라남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조정담당	4(1)	도정 정책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조정 지역발전 전략계획 및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전남발전연구원 관리
경상북도청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24(2)	인재양성, 교육지원(지역인적자원개발, 평생학습 등)
경상남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지원 담당	4(1)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 도립대학 지도 감독 및 대학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 및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초·중·고 및 교육청 등에 관한 사항,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 인적자원과 평생교육담당	9(5)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비정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기금

※ 출처 : 백은순 외 (2009).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모형 개발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3) 시도별 평생교육진흥 조례

- 광역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 2010년 6월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완료, 3개 시도는 제정중임
-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주요 골자
 - 2008년 12월 26일 제정
 - 주요 내용 : 목적,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시장의 평생교육진흥 사업 실시 및 예산 지원 사항,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제2절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1. 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평생교육이란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의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박원희, 2002, 재인용)
 - 1985년 UNESCO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학습권 선언¹⁰⁾(박원희, 2002, 재인용), UN의 세계인권선언 제26조¹¹⁾,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¹²⁾과 평생교육법 제4조 1항¹³⁾에 명시
 -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통한 교육을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고도 산업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습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함.(조홍식, 2001, 재인용)
-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생의 수단이자 목표이기 때문임
 - 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재활의 수단이기 때문임
 - 장애인의 평생학습이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가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임(박원희, 2001, 재인용).

10) 이 선언에서 ‘학습권이란 읽고 쓰는 권리이고, 계속 묻고 깊이 생각하는 권리이며, 상상하고 창조하는 권리이고,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지속하는 권리이며, 모든 교육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고, 개인적·집단적 역량을 발달시킬 권리’라고 규정하여 학습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박은주, 2005)

11) UN의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로 규정되어 있다.(국제인권조약집, 2000)

1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다.

13) 평생교육법 제4조 1항(평생교육의 이념)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생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은 직장과 여가를 포함한 삶 자체라고 보아야 함
 -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장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박은주, 2005)
- 평생학습을 ‘모든 이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학습’ 이라고 볼 때 장애인 역시 평생학습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체로서 목적대상이 되며, 자율성을 지향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함
 -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학습의 소산인 문화적 공생가치를 상승시키는 일
 - 이것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로서 평생학습 이념과 가치를 조화 있게 구현하는 것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장애인을 성숙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박원희, 2002).
 - 평생교육/평생학습이 본질적으로 그 누구든지 그 언제든지 학습에 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념이라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당연히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그 어떤 특성을 지닌 학습자이든 그 학습수준과 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자가 제도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가 열려있어야 함(한준상, 2001).
-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및 문제제기의 결실로서 2008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852호)’ 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33조와 제34조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관해 규정함
 - 제33조에서는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설치운영을,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연

구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제3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원하는 경우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법으로써 명시하고 있음

2. 장애인평생교육의 목표

-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이루어져야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일반인과 공통된 가치와 욕구·장애인의 특정가치와 욕구 및 장애인 개인의 가치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함(국립특수교육원, 2005)
 -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인간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의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현대사회에서의 경제활동과 자원에의 접근기회를 높여주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제반측면을 활성화시켜줌으로 인해 장애인 역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은 문해교육, 인적자원 개발교육, 시민교육 등과 같은 일반적 인 평생교육의 내용 외에 장애인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장애인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장애의 경감·극복내지 보완에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경우 적절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고, 장애청소년의 경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생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며, 장애성인의 경우 고용·주거·재정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국립특수교육원, 2005).

3.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과 주안점

- 그동안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평생교육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
 - 장애인 평생교육 부처별 기관별 지원 내용이 특성화 되지 않아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받기 어려움
 -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도 학령기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
 - 성인과 노인 장애인의 교육적 혜택이 극히 미약함
 -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장애인에게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움
 - 정부나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박성숙, 2005)
-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평생학습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전 생애를 통한 수직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평생학습 내용은 일상생활에 관한 기술 이외에도 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조건이 되는 장애인의 직업, 여가문화, 그리고 장애인의 성(sex)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것을 발판으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명시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법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그들의 심신의 장애로 인한 장애의 경감·극복 내지 보완에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그들의 적절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평생교육은 문해 교육·인적자원 개발교육·시민교육 등과 같은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내용 외에 장애인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욕구의 충족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은 정보 문해의 해소, 인적자원 개발교육,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민교육 내용과 함께 장애인 개인의 문화·연령·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박성숙, 200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검토

1. 선행연구 분석

- 본 연구에 참조하기 위하여 10편의 기존 연구성과물을 검토함
 - 각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그 제도적 뒷받침을 국가가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음
- 정인숙(2001)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연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를 토대로 모든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교육체제를 구축하며, 장애인의 통합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일반인 평생교육기관에 일정비율의 장애인 참여를 규정하는 장애인 의무 평생교육 제도 시행
 - 장애인이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창조를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장애인 지원 매뉴얼을 제작 · 배부하며, 평생교육기관과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 개발을 확대하며, 정기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평가
 -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부과하며,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조직에 장애인 평생교육 장학기능을 부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의 장애학생 교육 담당 조직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배치
 - 장애인 평생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무상으로 제

공하며,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원할 때, 적절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를 조사·분석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장애인 교육기관과 시설 운영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영역별, 장애정도별로 적절한 교육공학적 지원을 확대¹⁴⁾

- 노종채와 장우권(2006)은 “장애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위해 광주광역시 8개 평생교육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 * 문제점 검토
 -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유사프로그램이 많음
 -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일률적
 -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부족
 - 여가와 기타 프로그램이 중복성, 단순성,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학습프로그램이 일회적
 - 학습교육요원에서 중요한 전문 강사 활용 부족
 - * 대안제시
 - 평생교육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 사회의 장애우 평생교육기관 협의회 등을 조직하여 그 학습 내용들을 교류
 - 평생교육기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학습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제공

14) 하지만 정인숙의 방안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특수교육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생애주기별 교육 차원에서 보면 학교교육도 평생교육의 한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인숙이 주장하는 교육청의 장학기능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내용이 삽입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정해동과 이성봉은 “충남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 분석”에서 충남지역 장애인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운영 실태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구를 일반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 충남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줄 것을 제안
 - 충남지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전문가를 육성해 줄 것을 요구
- 박은혜(2007)는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E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 현행 장애인 복지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은 연령이 높은 연령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
 - 장애인 복지 행정 중 노력할 분야로는 의료 및 재활 분야이며, 직업·취업·경제적 자립 분야가 그 다음으로 높음
 - 거의 90%의 장애인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평생교육 정보를 얻지 못하는 데 있음
 -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으로 스포츠 강좌와 지역사회 관광 등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성공하기와 컴퓨터 활용 재택근무 등 직업 교육 및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희망
- 김민호(2005)는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평생교육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와 특히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 및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제화 등에 비추어 크게 세 가지로 제시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속화
- 장애인 평생교육간, 그리고 장애인 교육과 일반교육간 통합성 제고
- 박은주(2005)는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법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
 - 중앙정부에 의한 법적인 제도 마련
 - 교육의 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들과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평생교육법에 명시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활용
 - 장애인의 평생학습의 지원을 위한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박성숙(2005)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유기적인 통합의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지원 내용을 다양화·다원화·차별화·특성화, 협조 체제 구축
 - 영·유아 장애인과 학령기 장애학생들 그리고 성인 장애인들의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 지속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통합화 원리로 행정적 지원 정책 강화,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배치

2. 시사점

-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장애인평생교육관련 개선 방안은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측면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관련 측면의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음
- 특히 제안사항 중에는 재정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자들이 제안한 개선방안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측면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II-1>과 같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과 관련 측면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II-2>와 같음

<표 II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측면의 개선방안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무 평생교육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시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장애인의 평생학습기관과 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를 양성·배치해야 한다. - 교육청의 조직에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부과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평생교육운영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기관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조직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외에 평생교육센터 및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중랑행정부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을 통하여 교육적인 지원 외에도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정부의 적극적 지원(재정, 전문가육성,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물리적, 지리적, 법적, 경제적) 접근성 제고해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늘려야 한다. -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들의 연령별 및 성별 평생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표 II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관련 측면의 개선방안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장애인 지원 메뉴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반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의무운영제도 시행 - 기관종사자 및 장애인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생활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관광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요구도 높았다.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속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 평생교육간 그리고 장애인 교육과 일반교육간 통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 분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통합을 꺼린다. - 학습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해야 한다. - 평생교육기관과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장애영역별, 장애정도별로 적절한 교육공학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제도의 정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정부기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의 배치를 원하고 있었고,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교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평생교육과 양성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사 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통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제 3 장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반 분석

제1절 일반 평생교육지원

제2절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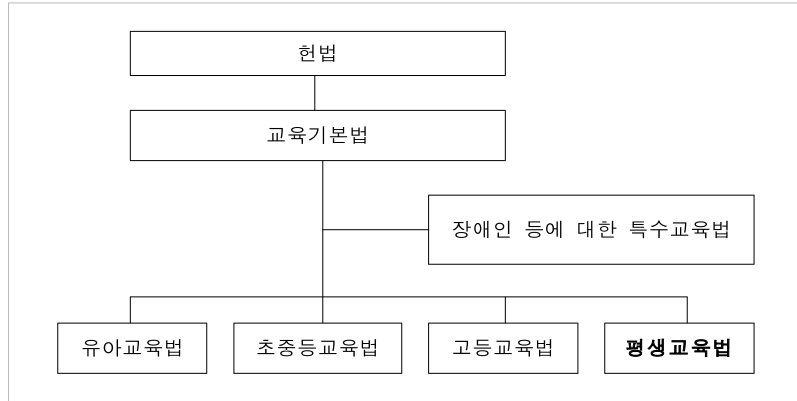
제 3 장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반 분석

제1절 일반 평생교육지원

1. 법적 근거

-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시작으로 이 법률은 1999년 8월 전부개정되어 법률 명칭이 오늘날의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
-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은 최근의 평생학습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새롭게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하의 내용과 같음

<그림 Ⅲ-1> 평생교육법의 기본 체제



<표 Ⅲ-1> 평생교육법의 구성 체계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타법과의 관계, 이념, 교육과정, 공공시설의 이용, 학습휴가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 기본계획수립,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평생교육협의회, 경비보조, 지도 및 지원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운영, 학습계좌제
제4장 평생교육사	· 자격, 양성기관, 배치 및 채용,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 학교, 학교형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제6장 문자해득교육	· 문자해득교육실시, 교육과정, 학력 인정
제7장 평생학습결과의 관리인정	· 학점, 학력의 인정
제8장 보칙	· 행정처분, 청문, 권한의 위임, 과태료 등

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3) 학습비 지원 및 유·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 직장인들이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해 자아실현과 능력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도입

- 교육전문 인적자원 등을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연수기관의 강사요원, 평생교육활동의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강사정보은행제 운영
-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학습계좌제 도입·운영

5)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둠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둠
-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둠

<표 III-2>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 추진 체계

구분	중앙	시·도(광역시)	시·군·구(기초)	
명칭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장관 소속)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 시·군·구 평생학습관	
기능	위원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정부 정책 및 사업조정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조정, 심의, 유관기관 연계 등	평생교육 실시 관련 사업간 조정 등
	전담기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구성	위원장 : 교육부장관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의장 : 시·도지사 부의장 :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위원 : 20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의장 : 기초단체장 위원 : 12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6)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의 운영

-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적·운영하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7)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 제도 정비

-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평생교육사의 양성·연수제도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전문가가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및 명확함 도모

<표 Ⅲ-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자의 조건 강화

-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 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이 법 시행 당시(2008. 2. 15.),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

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4개교만 해당됨)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함

- 2008년 2월 15일이후부터 신규로 설립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의 개인 시설도 설립 주체를 변경해 나가도록 유도·권장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그 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70조를 준용함

9)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시설을 새롭게 법제화
- 학교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학교형태 또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인가제를 유지하고 학력미인정시설의 경우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신고제의 보고제 전환 등 설치·운영상의 자율성 제고
- 학교의 평생교육(제29조)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30조)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제31조)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제32조)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제3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표 Ⅲ-4>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시설 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담당과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학력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학습정책과
	학력미인정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학습정책과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	학력인정	교과부장관 인가	직업교육정책과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정책과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 인정	교과부장관 인가	지식정보기반과
④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정책과
	대학(교)	학력 미인정	교과부장관에 보고	평생학습정책과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⑧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력 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10) 성인을 위한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에 성인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성인의 문자해독교

육 및 성인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일정한 성인 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평생교육 정책 동향

-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평생학습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제2차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2008~2012)이 시행되면서 더욱 본격화됨
- 평생학습기본계획에 따르면
 -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운영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 교육기회를 농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
 -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의 실질적 평생학습기회 확충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추진 인프라를 정비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더욱 확대
 -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
 - 독학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평생교육 정책 확대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에게도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고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평생학습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한국은 17%, 영국 45%, 스웨덴 54%), 초등학교 학력 미만의 저학력 인구가 약 24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문해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전체 교육예산대비 평생교육예산은 0.1% 미만, 약 80여억원 수준).

제2절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1. 법적 근거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련된 법안으로는 헌법, 기본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및 운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의 여러 가지 법률의 조항들은 대부분 강제성을 띠고 있음
 - 이는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공급자의 권한이 아니라 수요자의 권리와 평등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 언급된 모든 법률이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법률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국민’ 한사람으로서의 권리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
 - 이러한 인식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며, 위의 법률들이 입법, 수정 혹은 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

1) 헌법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다.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질 수 있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 장애가 기본적 인권의 수혜에 대한 사각지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평등의 원리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요구에 따른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특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정신지체인의 특성상 개개인의 요구에 따른 평등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의무적 평등이고 이것은 누구나 그들의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을 잘 못 해석하면 능력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요구된다는 것이지 그에 따라 차별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 평생교육 임무)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들은 그의 의료, 교육, 생활 등에 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립생활이 어려운 정신지체인들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 자신의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자립생활 혹은 독립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교육기본법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 2 조 (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법안에 언급된 것 외에도 일상생활훈련, 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로 한다.
제4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특별한 전제 없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에 제약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의 보장을 더욱 명확히 하며 장애인도 아무런 불리함 없이 평생교육의 접근 기회를 가져야 함을 말한다.
제 5 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 6 조 (교 육 과 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시민의 보편적 요구보다는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다.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등 협의 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몇몇 단체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속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 협회)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군·구협의회는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시·군·구협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17조 (지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도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08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아직까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노인평생교육이나 여성평생교육에는 관심을 쏟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 특히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부서를 만들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23조 (학습계좌)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체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습계좌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이다. 물론 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각 급 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학교는 지역사회 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학교는 지역사회 시민의 평생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여 학교가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 30 조 (학교 부설 평 생 교육 시설)	<p>각 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각 급 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대학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ampus Life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장애인도 대학의 시설 및 환경을 통하여 자립생활 등 개인의 필요에 따른 요구를 채워나갈 수 있다.</p>
제 36 조 (시민사 회 단 체 부 설 평 생 교육 시설)	<p>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장애인들은 학령기 이후에 극소수의 직업인이나 고등교육의 진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지엽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거나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이 평생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그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장애인의 사회로의 자연스러운 전환 및 개인의 질적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p>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평생교육법은 2007년 10월 17일 일부 개정되고 2008년 4월 18일 새롭게 시행된 것으로 여기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음
- 아래에서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 조항들을 중심으로 나열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2조	<p>‘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도 민주시민이며 그들의 교육권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다. 민주시민이며 국민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p>
제3조	<p>‘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여기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의 근거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장애인도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하며 발달해 갈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p>
제4조	<p>‘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p>	<p>이 조항에서는 모든 인간은 외적 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한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근거를 더욱 확실히 밝히고 있다.</p>
제10조 1항	<p>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 되어야 한다.</p>	<p>평생교육의 형태가 그 대상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당연히 장애인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p>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07년 5월 25일 제정되고 2008년 5월 26일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음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의 중별 및 정도의 구분이 없이 평생교육의 권리가 주어진다 것은 특별히 그 장애가 심하다하여 국민으로서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의 방법의 일환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은 그 의미를 갖는다.
제6조(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자립을 위하여 보호 외에도 자립을 위한 끊임 없는 교육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은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은 사회적응 훈련의 좋은 한 방안이다.
제20조(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교육정책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

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

-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 이라고 그 제정 이유를 밝힘
- '생애주기에 따라' 라는 용어 규정과 같이 이 법은 제정 당시 장애인의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혀둠

5) 장애인복지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33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시행일 2008.5.26)
제33조 1항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모든 정규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범위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선택적 조항이긴 하지만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과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연구를 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교육권에 대한 합리적인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33조 2항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속에는 장애인도 포함된다.
제33조 3항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제33조 4항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협의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1항 (장애 인평생 교육시 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 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 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 정이나 시설에 방치, 보호되는 사례가 많다. 비장애인의 경우 학령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원격교육의 형태나 공민학교 형태의 기관에 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매체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원거리의 프로그램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을 학습하 는 경우는 학습상의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 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령기를 지 난 장애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된 평생교육 형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34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제34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한다.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10일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찾
아볼 수 있음

조항	조문 내용	검토내용 및 연관성
제 1조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 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	여기에서 국가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 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

	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 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회는 인간 성장을 위한 최선의 환경 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간 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으로서 사회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 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사회 참여를 위한 것이며 동시 에 사회 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 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 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 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 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 로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평생교육 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차별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 그램의 마련과 그에 대한 법률적 제도를 구 비해야 한다.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 한다는 것은 바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이루 어질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개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7) 관련법률 검토 및 시사점 종합

-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됨
 - 이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균등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개
인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결국 개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
공해 주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역시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신앙,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
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과 학습기회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고 규
정됨

- 이는 장애인 역시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교육상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 장애인의 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표 III-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관련 조항

<p>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p> <p>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p> <p>④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p>

- 장애인 관련 법에서의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4조 “장애인 복지시설기관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 이 있는데, 이중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의 교육비 지원 규정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복지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7년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정의에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 생애에 걸쳐 장애인의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이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음
-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기반이 조금씩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2. 정책적 지원 현황

1) 연혁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대책 강구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의 시발점
 -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 사항 중 “초, 중등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는 내용을 마련
 -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단발성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함
- 개선사업의 시작
 -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3`2007)” 이 수정되어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
 -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은 2005년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시작
 - 당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장애인 야간학교에 대한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과 검정고시 준비 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야간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러한 지원은 2005년도에 한하여 지원된 한시적인 지원책에 머물
- 정책 지원활동 착수
 -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한 두 개씩 내놓으며, 조금씩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됨
 -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표 Ⅲ-6>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부문 합의사항(장애인교육권연대)

경기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충북	충청북도교육청은 성인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인장애인 교육시설(야학 등)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충남	(사) 한빛 야학에 보조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남지역 평생학습관(원)에 1종 이상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자 야학 및 밀알야학에 대해 성인장애우 학생수, 교직원수를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부평장애인복지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 5백만원 ○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에 중앙도서관 이외에 3개 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성인장애인 학력격차 해소프로그램 공모 지원 : 4백만원
전남	- 2007년 평생학습관 5개소에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1개 과정(문해교육 포함)씩 설치 운영하고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은 현재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야학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교과서를 지원한다.

○ 민간 주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은 그동안 별도의 지원 기관 없이, 기존의 복지 관련 기관 및 고용 관련 기관 등에서 진행되어 왔고, 일부의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로 진행되어옴

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시설

(1) 시설구분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자료집에 의하면, 평생교육 지원 시설을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장애인고용기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언급

〈표 Ⅲ-7〉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구분	지원기관	지원부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유아 ○ 장애학생 ○ 장애인 ○ 장애인	○ 의료재활 ○ 직업교육 ○ 생활교육 및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 직업교육 ○ 생활교육
	○ 특수학교(급)	○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학생	
	○ 직업전문학교 ○ 고용개발원	○ 고용노동부	○ 장애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보건복지부	○ 장애인	○ 생활교육 및 지원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시설	○ 장애인야학, 일반야학 ○ 복지관 및 교회 내 집정고시 공부방, 장애인 학습봉사 동아리 ○ 집정고시 학원 ○ 평생교육지원 기관 내 한글교실	○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학생 ○ 장애인	○ 문해교육 ○ 생활교육

* 정동영 외,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01.12. p.47. 의 표 내용에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해 표를 재구성했음.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로 나눌 수 있음
 - 각 시설에는 생활 또는 이용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직업교육,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상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유아에서부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아우르고 있음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는데, 전국에 약 10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다양한데, 진단·관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수화관련사업, 여성장애인복지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진행함
 - 이 중 교육적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재활(치료교육), 직업재활(직업교육), 사회교육(교양교육) 등을 들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학력 미취득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글교실 등을 열어 비문해 장애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3) 장애인 고용지원기관

- 장애학생에게 학교에서부터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기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쟁고용(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한 작업환경에서 훈련을 받거나 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

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됨¹⁵⁾

-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 훈련시설로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직업 생활의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해, 장애인의 고용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지원하고 있음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 1990년대 한국에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운동의 이념이 도입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로 해, 2000년도 초부터 전국 각 지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민간 주도로 설립됨
- 이곳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 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이용 교육, 자립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 직업 혹은 고용 서비스, 재정 지원 상담, 동료상담 등의 지원을 함
-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립생활이념교육과 같은 내용은 평생교육의 개념 중 교양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과 직업 혹은 고용서비스는 직업교육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립생활센터가 각 지역에 활성화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신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중심의 주거형태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은 주거훈련, 직업교육, 여가교육, 성교육 등 성인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직업교육과 여가교육 등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3.6.13 보건복지부령 250호] 별표3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제32조관련],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

되고 있지만, 주로 사회복지사가 전체 교육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각각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교육 지원은 못하고 있는 형편임

(4)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시설

- 평생교육법에서부터 최근의 잔류 비문해자 해소 관련 정책에서도 장애성인의 비문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형편
- 따라서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야학 등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할 장애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 사업은 오히려 민간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진행되고 있어, 최근 몇몇 장애성인 평생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임
- 장애성인을 위한 민간 주도의 문해 교육 시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우선 시설교육기관, 장애성인야학, 복지시설 등의 공부방 등이 있음
- 이러한 곳들은 정부의 특별한 보조 없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주도아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문해교육 등의 기초교육 사업 이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장애성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
- <표 III-8>과 같이 민간 주도의 장애성인 교육 지원 시설을 전문기관과 비전문기관으로 나눈 주된 이유는 전문강사의 존재 유무, 일련의 학습 계획을 갖고 장기간 교육 제공 유무, 적절한 교육 자료와 교육 환경 제공 유무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 내 문화센터 등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수요자가 발생하거나,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교육이 성립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가 등이 지역에서 소규모로 만든 공부방이나, 교회 또는

대학 동아리 등이 운영하는 학습봉사동아리 등은 교육을 담당할 주체가 대부분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은 별도의 학습 지원 체계를 통해 문해 교육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개인의 선심과 의지에 따라 교육 지원의 수준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음

<표 Ⅲ-8> 민간 주도의 장애성인 문해 교육 지원 시설의 유형 및 현황

민간기관의 유형	종류	특징	추정 개수	비고
전문기관	사설 검정고시 학원	매월 20여만원 내외의 학원비를 지불해야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성인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6개소	1999년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장애성인) 야학 기관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교육 서비스 제공. 검정고시 졸업 기회를 제공해 장애성인들의 교육연환을 확장시켜 줌.	30개소	2009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비전문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 내 문화센터 등	문해교육에서부터 검정고시교육, 대입 수능준비 교육 등 다양하지만, 교육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행됨.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추정 불능	
	공부방, 교회 학습봉사동아리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교습 형태로 학습 봉사를 함. 교육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 수혜 장애인의 수가 너무 작음.	추정 불능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미공개 자료

○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에게 문해 교육 지원 체제는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많은 장애성인들이 문해 능력을 획득했으며, 나아가 학력 신장의 기회도 취득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야학의 경우, 별도의 교육 과정 수립, 훈련된 교사에 의한 교육 지도, 적절한 교육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등 일반 교육 기관에는 못 미치지만,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통해 나름의 전문적 기초 교육 지원 체계를 장

애성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기관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수학 등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과정의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입을 위한 수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학습 활동(소풍, 수련회, 야유회 등)과 특별 활동(노래, 연극, 작문 등)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문해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개별 교육기관의 역량에 달려 있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교육기관이 많으며, 또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특수교육적 지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임

3.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현황

- 제3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08~'12)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계획의 장애성인 교육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08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09년도에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및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09년도에 개발하고, '10년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11년도부터는 우수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의 경우 '10년도 8억원, '11년도 8억원, '12년도 10억원 등 3년간 총 26억원을 책정하여 장애성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Ⅲ-9〉 장애인성인교육 연도별 소요예산(추정)

(단위 : 억원)

추진연도	계	'08	'09	'10	'11	'12
장애인교육 지원 확대	26	-	-	8	8	10

※ 총액 산출근거 : '07년 특수교육 총예산(11,453억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5.4% 인상률 적용하고, 운영비, 시설비 등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적용하여 특수교육 발전계획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합계

4.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

- 2010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68,835명이며 이중 90%에 달하는 61,910명이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임
-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일부 장애인복지관 등이며, 대부분의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평생교육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체 사업이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시도에 비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표 Ⅲ-10〉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 및 인원	주요내용	예산 :지원액 (천원)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발달장애인 20명	- 발달장애인 직무 및 인성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선택적 교육 -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66,500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여성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 장애인 동료의 직접상담 - 기초학습, 사회적응, 취업 및 자활도모 등 교육사업 - 자조모임활성화, 자녀교육,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 가족지원사업 - 법률, 복지서비스 정보, 차별철폐 등 홍보사업	150,00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여성 장애인 교육기관 2개소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관련 교육 - 보건·복지 관련 교육 - 여성장애인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문교육 - 기타 사회적응 및 참여, 취업과정, 문화향유, 체험 등	50,00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발달 장애인 40명 농 아 장애인 50명	-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 - 기초학습,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64,000

-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2009년 전국 비교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절대적 개념에서 볼 때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음

- 아래 <표 Ⅲ-11>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비교 자료로 해석상 한계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예산이라 할 수 있음

<표 Ⅲ-11>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구분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서울	380,307	100,000,000	262.9
부산	159,244	146,000,000	916.8
대구	106,969	106,000,000	990.9
인천	121,269	561,000,000	4,626.1
광주	62,514	85,000,000	1,359.7
대전	64,886	96,000,000	1,479.5
울산	45,182	158,000,000	3,497.0
경기	447,540		0.0
강원	91,324	41,000,000	449.0
충북	85,507	178,000,000	2,081.7
충남	116,560	186,000,000	1,595.7
전북	123,655	44,000,000	355.8
전남	135,837	0	0.0
경북	152,368	20,000,000	131.3
경남	163,019	128,000,000	785.2
제주	27,626	14,000,000	506.8
전국평균			1189.9

* 2009 시도특수교육여건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상기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전광역시가 직접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최근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농아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이들의 자립능력 배양과 정서함양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개 분야 3개소(총6개반 90명)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Ⅲ-12> 대전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 수행기관별 운영내용

수행기관 공모분야	수행기관 지정개소수	운영계획 기본계획(1개소당)		
		반편성	총인원기준	교육대상
발달장애인평생교육	2	2개반	20명	성인
농아장애인평생교육	1	2개반	50명	성인

- 중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하는 내용은,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 기초학습,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의 상기 프로그램이 장애인 성인 교육의 시발점으로써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위탁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 및 안적적 추진 등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됨
- 실질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야학) 4곳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과 운영상태에서 문해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직업 교육과 여가 및 체육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 4 장

해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제1절 미국의 사례

제2절 일본의 사례

제 4 장 해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제1절 미국의 사례

-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통합과 지역사회참여라는 가치아래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보다는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이하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사례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

1. 직업·고용 중심의 전환·평생교육 모델

1) Duckworth School / Lab School

- James E. Duckworth School과 Lab School은 워싱턴 DC에 위치에 있는 학교들로, 장애청소년 및 예비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전환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전환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인 14세에서 21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보다 나이 어린 장애학생에게는 학교 내의 기능적 교과수업, 독립생활기술 등을 지도함
- 이들 두 학교는 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방식과 그 주된 대상자에 있어서는 다소 차별화된 양태를 보임

<표 IV-1> Duckworth School과 Lab School의 특징 비교

	Duckworth School	Lab School
주요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청소년 및 예비성인장애인
중점교육내용	직업중심의 전환교육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전환교육
네트워킹방식	지역기업체의 실습 및 고용 연계	지역사회와 포괄적 연계 방식

- Duckworth School의 전환교육 프로그램은 철저한 과제분석과 반복훈련에 바탕을 둠
 - 작업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졸업 후 인근의 보호작업센터와 연계하여 그곳에서 지속적인 훈련과 생활을 지원
 - 또한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지역 내 호텔이나 노인요양원 등으로 이동하여 지원고용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때 직무지도원(job coach)이 동행하여 지도
 - 주로 하는 일은 건물 내 청소, 장식, 창문 닦기, 정원 가꾸기 등이고 훈련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실습 비용을 지급하지만, 일단 고용이 되면 경쟁고용 상태로 회사로부터 정식 월급을 받고 취업이 됨
 - 지역사회 내의 많은 업체로의 취업을 높이기 위하여 Duckworth School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의 특성 및 능력, 할 수 있는 작업내용 등을 홍보하여 지역 내 신청 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적합한 학생을 해당 업체에 배치 및 훈련하여 취업시키는 ‘선배치-후훈련’ 방식을 채택
- Lab School은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청소년 및 예비성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 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방식은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전환교육 중심으로 행해짐
 -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들은 이들의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개인의 장애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환교육의 중점지도 영역으로 설정

- 전환교육과정의 대부분의 시간이 예능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 영역에 많이 할애되고 있는 특성을 보여줌
- 필요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 후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돕고,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도 및 연계를 강조

2) Miller Career and Transition Center

- LA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전문화된 직업 및 전환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 곳임
- 이전의 학력취득과는 상관없이 14-22세의 장애인 중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사항들을 지도하는 한편 다양한 고용분야와 관련된 보다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교육,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둠
-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선택(individual interests and choice)에 대한 존중'을 훈련, 지도, 교육 등의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임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은 다양한 직업과 훈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필요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됨¹⁶⁾
- 이 센터는 현장에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채용정보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모든 훈련, 교육프로그램에서 직무조정자(job coordinator) 및 이들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assistant)이 배치되어 운영상황을 점검함

16) MCTC가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약 200여개의 업종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3) Goodwill Industries

- Goodwill은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직업훈련, 취업경험, 그리고 일상생활 스킬을 제공하는 자립 지원을 중요한 미션으로 하고 있음
- Goodwill은 세계최초로 정신지체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하던 물건이나 새 것을 기증받아 수선하거나 다시 짠 가격으로 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자금을 지원함
- 장애인과 관련된 Goodwill의 주요 사업영역은 크게 소매(Retail Sales), 산업 서비스(Industrial Services), 노동력 및 직업 개발(Workforce and Career Development) 등의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음

2. 자조집단에 의한 평생교육지원 모델¹⁷⁾

1) Computer Access Center

- 미국 LA에 위치한 Computer Access Center는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 아동들과 성인에게 교수적 공학(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임
-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장치를 개별 장애아동들과 성인들의 특성에 맞게 접근시켜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지향
- 이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다는 이미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의 장애 상태와 정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개발하고 접근시켜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교사와 부모들을 연수하고 자격증을 발급해 줌
-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3년 동안 계약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전체

17) 여기에서 소개하는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설명은 김형일 외(2001)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 방안 연구』와 정인숙 외(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발췌, 정리를 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적인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곳에서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위탁 훈련을 실시

- 컴퓨터를 통한 훈련 내용으로는 직업을 찾는 일, 취업 시 상담요령, 각종 취업양식 작성법 등이 있음

2) New Horizons

- New Horizons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잠재력과 장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전환지원, 일상 생활지도, 주거생활지원 등임

<표 IV-2> New Horizons의 전환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보호)작업장 (workshop)	New Horizon 건물 내의 여러 작업장에서 지역 내의 500개 공장에서 가져 온 일거리로 작업을 한다. 작업내용은 문구류 포장, 과학실습용 학습교재 조립, 전기 부품조립, 우편물 수집, 배선, 포장 등이다.
모빌크루 (mobile crew)	차를 타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 지역사회 내 조경사업, 수위나 경비, 재활용 서비스 작업 등을 실시하고 지역의 많은 회사들과 계약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	선배치 후지원 체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자들을 지역사회 내 100개 이상의 기업에 배치하고, Job Coach가 각 작업자들의 개별 성취 목표에 맞게 현장지도 훈련을 실시한다.

<표 IV-3> New Horizons의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은 장애가 심한 학생이 주로 훈련을 받는 곳으로서 보호작업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전 기술과 훈련을 실시

	한다. 절반은 교실에서, 절반의 시간은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 학습을 실시한다. 2명의 담당교사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 교사 1명이 3명의 학생을 데리고 지역사회에 나가면, 다른 교사는 나머지 3명의 학생을 데리고 교실에서 학습한다. 매달 Regional Center로부터 18달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한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특수교사와 자체 교직원과 함께 운영 한다
일상훈련활동센터 (day training activity center)	훈련생들은 기초생활기술 훈련과 지원을 받는다. 훈련내용은 돈관리, 안전, 작업습관, 건강, 대인관계, 위생, 자기주장기술 등을 센터 내의 별도의 교실에서 특수교사들이 지도한다.
Art Center	학생들이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미술활동과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한 작품들을 백화점 등에서 전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요리사”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과 가정생활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은 이 기관의 전체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지역사회에서의 직종 개발과 훈련, 생활훈련프로그램의 학습장, 지역에서의 시설 개방,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등이다. 특히 시설을 지역주민의 행사를 위한 각종 모임, 연수, 바베큐 파티, 결혼식장으로 임대해 주거나 음식도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표 IV-4> New Horizons의 주거생활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주거프로그램 (residential program)	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9개의 집에 각각 6명씩 54명이 생활하고 있고, 3명의 직원이 거주한다. 직원들의 도움과 동료 거주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생활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주거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주지역에서 볼런티어 활동, 나무심기 행사, 기관 주체 특별행사등기 등으로 이웃 주민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생활지원 프로그램 (supported living program)	훈련생들이 독립적으로 아파트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 필요한 만큼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장애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른데,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 장애인 한 명에 24시간 3교대로 직원이 배치되어 지원을 해 준다. 독립생활 지원프로그램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금전관리 등 도움이 필요한 일부만 지원을 해 준다.

3. 지역사회생활(및 적응)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

1) ACIT(Almanson's Community Integration & Training Program)

- ACIT는 성인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임
- 발달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들은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사고, 사회통합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이루어짐
-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육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것과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행해지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는 계산하기, 식사계획하기, 쇼핑하기, 식당 가기, 공원이용하기, 은행이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견학하거나 재미있는 장소 찾아가기도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임

2) Asian Pacific Community Services

- Asian Pacific Community Services는 교육용역회사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으로 주정부 재할국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을 받는 단체를 말함
- 이 기관에서는 14개 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계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선생님들이 연결되어 자아의사결정 능력, 일상생활 기술(건강, 위생, 청결, 예절, 장보기),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직원1인이 3인의 이용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30분 까지 지역사회내의 상점이나 시설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실시함

3) Ability First

- Ability First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룹홈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음
- 18세 ~ 59세의 성인장애인이 주 대상자이며, 개인이 원하면 입주기간의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함

- 그룹홈의 구성은 총 관리자1인, 자립생활 지원자 2인, 요리담당 지원 1인과 15인의 장애인이 함께 거주함
- 주택의 구조는 1인 또는 2인이 한방을 사용하고 기숙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음

4) Jay Nolan

- Jay Nolan은 자폐성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기관에서 제공되는 독립 생활지원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장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과 친구, 도우미, 지원자 그리고 이웃사람들이 포함되는 집단을 형성하여 그 집단이 함께 하나의 순환적 고리의 형태(Circles Support)로 24시간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장애인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24시간 동안 장애인이 개별적 주거공간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4. 자기옹호·임파워먼트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

- (발달장애인) 리더쉽 발달 센터(Center for Emerging Leaders, 이하 CEL)'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대학의 부설로 설치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발달장애인의 리더쉽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임
- 지역의 사회의 통합된 삶에 대해 경험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청소년과 청년들이 동료 멘토가 되어 자신들보다 경험이 적고 성인기를 준비하고 있는 동료 발달장애인에게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를 가진 (홍보)대사와 동료 멘토를 양성
- 홍보대사와 동료 멘토들은 자기관리 옹호자로서 그들의 지식, 통찰력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통합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유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기관이나 단체에 파견되기도 함
- CEL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 V-5>와 같음

<표 IV-5> CEL의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동료 멘토 프로그램 (Peer Mentorship)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하여 지역사회, 고등교육 등에서 독립적인 생활의 경험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의해 제공되는 동료 멘토십 프로그램
부모(교육)워크숍 (Parent Workshops)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회에 대해 부모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발표 교육 (Educational Presentations)	자기결정 분야의 발달장애인 대표가 학교,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 방문하여 자기권리옹호, 자기결정, 자기능력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발표하는 프로그램
능력 개발 (Capacity Building)	장애인을 피고용자, 프로그램의 참여자로서 포함시키고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관과 단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5. 통합적 평생교육 모델: BARC

- BARC(Bakersfield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는 필수적인 직업 훈련, 고용지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주 Kern County에서 가장 큰 발달장애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 5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성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임

- BARC에는 19가지 이상의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은 235명의 직원들이 운영 하고 있으며, 조기발견·영유아 발달·성인에 대한 일자리(포장·목공·재활용·문서 관리 작업장을 운영하며 지원고용 프로그램도 제공)·권리옹호·가족휴식·보장구를 이용한 직업능력 및 일상생활 기술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각각의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맞추어 설계되고, 때로는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제공됨
- Activity Center: 중도장애인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은 하루 평균 두 시간 정도 제공되며, 이용자들이 직업 활동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Adult Development Center: 최종도 장애성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주간 프로그램을 제공
- Client Service: 이용자 조정, 자기권리 옹호,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자기권리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등을 제공
- Community Integration: 주간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들이 직업 활동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Infant Development Center: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아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Supported Employment: 지역사회에서 그룹이나 개인별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간 프로그램으로 Job Coach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 Supported Living: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 하며, 지원은 BARC 캠퍼스에 있는 모형 아파트에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집에서 1대1로 지원
- Transportation: 버스로 집에서 BARC까지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등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

○ Work Activity Program: 다양한 직업 및 작업 활동프로그램을 제공

<표 IV-6> BARC의 직업·작업 활동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내 용
BARC Shop	BARC의 상점은 캠퍼스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옷이나 관측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
E-waste Recycling	전자 쓰레기 재활용은 새로운 주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에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하는 분야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
Janitorial	캠퍼스에서의 건물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생 관련 지원 고용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ackaging	포장분야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캠퍼스에서의 주간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너트와 볼트를 포장하는 것, 우편물을 정리하는 것, 카드판을 재활용하는 것, 음료수 상자를 분해하는 것 등의 일이 있다.
Recycling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이용자들에게 고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센터에 다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주요 재활용 처리 센터가 있다.
Woodshop	주간 프로그램으로써, 캠퍼스에서 파레트를 분류하고 IKEA에 수리 서비스 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2절 일본의 사례

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

- 현재 일본의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는 헌법·교육기본법·사회교육법 및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되는데, 이를 기초로 평생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음
- 일본의 사회교육법(법률 71호)은 제1조에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행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을 사회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에 “모든 국민이 모든 기회·모든 장소를 이용하여 스스로 실생활에 부합하는 문화적 교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한 내용보다는 일반인의 평생교육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생활능력과 직업능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 공민관 교류의장

- 일본 東京都 國立시의 공민관에는 일반청년과 장애청년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찻집을 운영함
-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민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제를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小林, 1995)
- 이 찻집은 공민관 1층에 설치된 것으로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일 자리를 얻는 것이 힘든 현실에서 이들이 일할 장소와 생활방편을 얻고 있음

(島田, 1996)

-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이 찾집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여유와 교류의 장, 그리고 생생한 교육복지의 장을 제공
-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늘어나 장애인이 일하면서 배우고 운동을 하고 즐기고 책을 빌리는 등 이 장소는 장애인의 정상화의 장(場)이 되고 있어, 복지 와 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임

○ 중앙도서관 3층을 장애인 부모 단체에서 운영

- 중앙도서관은 외출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과 노인의 가정에 매월 한 번 책을 배달하는 활동과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어 주는 운동(도서관 내의 낭독실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읽어 줌)을 실시
- 도서관이 복지의 관점을 갖게 됨으로써 한층 풍요로운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예는 장애인의 정상화를 성취하는 것이며, 이들과 일반인간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2) 개방대학

- 일본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개방대학”은 1998년에 오오사까부립대학 안 도우연구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4년 동안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개방대학은 지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지적장애인의 발달가능성,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공헌을 목적으로 학생이 흥미를 지니고 있는 것, 생활에 필요한 것, 학생이 희망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함
- 그리고 과목은 달라도 그 기본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기를 표현하는 것, 표현하고 싶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두고 있음

3) 장애청년학급

- 장애청년학급은 1974년 11월에 쪄우다시공민관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복지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시작됨
- 청년학급의 개설을 위해 시의 사회교육과는 복지사무소와 협력하여 요구조

사를 실시함

- 공민관 학급은 매월 1주와 3주 일요일에 공민관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이 학급은 다양한 연령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밴드·뮤지컬·노래 등의 음악과정 과 건강·자연·수공·생활 등의 7개 교과를 운영하고 있고, 교과지도는 모두 담당 자로 불리는 직원이 담당함
- 공민관의 직원 4명이 학급의 행정 담당 직원으로 배치되어 시설의 준비, 그 밖의 학급운영의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함

3.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평가

- 일본의 평생학습 지원정책은 ‘생애교육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반적인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평생학 습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 미로 해석됨
- 일본의 평생학습 지원정책은 국가수준 및 지역자치 수준에서 획기적인 방안 이 계획·집행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은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및 공민관에서의 사회적응 교육과 여가활동교육이 주가 되며,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관은 공공 직업안정소·장애인직업센터·장애인고용지원센터 등으로 나뉘어짐
- 공공직업안정소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직업알선이나 직업지도·고용보협업 무 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 어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에서부터 직업지도·직업알선·추수지도 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다 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고용을 미달성 사업체에 대해 달성계획을 세우 도록 지도함
- 공공직업안정소는 학교와 협력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 함과 동시에 직업알선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지

- 지역장애인직업센터는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47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센터에서는 노동성 장관 인정의 장애인직업카운셀러가 중심이 되어 직업평가·직업지도·직업준비훈련·담당부서개발지원사업·직업강습·직업적응지도·고용주의 고용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지원센터는 정신지체인 통근기숙사나 보호작업장·장애인능력개발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후생성에서 생활지원사업가를, 노동성에서는 취업지원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취업 지원이나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생활면의 상담·조언을 동시에 실시하는 조직임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 사례

- 일본도 장애인 평생교육이 학교와 공공 직업안정소의 노력만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모델이 개발되고 있음
- 교토(京都)시의 ‘자립터전네트워크’는 지역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모형인데, 이 네트워크는 1994년 양호학교 학생의 취업기관의 개척과 정착을 목표로 교육·노동·복지 관련 기관과 가정의 연대를 보다 긴밀히 해 학생의 진로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사회계몽의 추진을 목적으로 시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조직됨
-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노동행정기관(시장장애인직업상담실, 현장장애인직업센터), 기업단체(현장장애인고용촉진협회 회원 693 단체), 복지관계단체(정신지체부모회), 양호학교(정신지체양호학교 6개교, 지체장애양호학교 1개교, 병약양호학교 1개교), P T A(시립 양호학교 P T A 연합회), 시행정당국(시 복지국 장애복지과, 정신지체인 재활상담소, 교육위원회 특수교육과 등)의 14개 단체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전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합의를 하는 효과를 나타냄(小鹽允護, 2000).
-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사례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고용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틀에서 장애인의 생활적응상담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와 같은 총괄조성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5. 일본사례검토의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은 관련 기관만의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풍토와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함의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교육·생활을 전체적·포괄적·총괄적으로 지원·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와 관련하여 그들의 직업적 능력을 회복하고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생활능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의 공민관을 주요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같이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다른 나라와 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의 직업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생활 능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장애인은 직업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직업기술을 계속하여 습득하는 기회를 평생 보장받아야 하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이나 취

마오락활동 등에 대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계속 보장받아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는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장애인을 별도의 시설이나 기관에 분리하지 않고 가능한 지역사회 내의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에 통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되, 특히 자기주장이나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체제를 수립해 나가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 5 장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제1절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제2절 일반 평생교육관련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분석

제3절 장애성인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요구도 분석

제 5 장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제1절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1) 장애유형별 구성

- 응답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은 <표 V-1>과 같음
 - 지적장애 35.5%, 지체장애 22.9%, 발달장애 20.6%, 정신장애 12.1%, 뇌병변장애 4.2%, 청각장애 2.3%, 시각장애와 기타 0.9%, 언어장애 0.5%로 지적·발달·정신장애가 약 68.2%를 차지하고, 지체·감각장애를 비롯한 기타 장애가 약 31.8%를 차지함
- 사례수가 적은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로, 시각·청각·언어·기타를 감각·기타장애로 제범주화하여 통계처리한 결과는 <표 V-2>와 같음

<표 V-1> 장애유형별 구성 1

(단위 : 명,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기타	전체
49(22.9)	9(4.2)	2(0.9)	5(2.3)	1(0.5)	76(35.5)	44(20.6)	26(12.1)	2(0.9)	214(100.0)

<표 V-2>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58(27.1)	76(35.5)	44(20.6)	26(12.1)	10(4.7)	214(100.0)

2) 장애등급별 구성

- 응답자의 장애등급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은 <표 V-3>과 같음
 - 1급 52.3%, 2급 35.0%, 3급 11.7%, 4급 0.9%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99.1%를 차지하고 있음

<표 V-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1급	33(56.9)	38(50.0)	28(63.6)	8(30.8)	5(50.0)	112(52.3)
2급	18(31.0)	27(35.5)	12(27.3)	14(53.8)	4(40.0)	75(35.0)
3급	6(10.3)	11(14.5)	4(9.1)	4(15.4)	0(0)	25(11.7)
4급	1(1.7)	0(0)	0(0)	0(0)	1(10.0)	2(0.9)
계	58(100.0)	76(100.0)	44(100.0)	26(100.0)	10(100.0)	214(100.0)

$\chi^2 = 20.293, df=12, p>.05$

3) 장애유형·성별 구성

-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은 <표 V-4>와 같음
 - 남자가 53.3%, 여자가 46.7%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에 남성의 분포가 높고, 정신장애의 경우 여성의 분포가 높음

<표 V-4> 장애유형별 성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남	33(56.9)	34(44.7)	34(77.3)	10(38.5)	3(30.0)	114(53.3)
여	25(43.1)	42(55.3)	10(22.7)	16(61.5)	7(70.0)	100(46.7)
계	58(100.0)	76(100.0)	44(100.0)	26(100.0)	10(100.0)	214(100.0)

$\chi^2 = 17.573, df=4, p<.01$

4) 연령별 구성

- 응답자의 연령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은 <표 V-5>와 같음
- 20세 미만 10.8%, 20세-24세 64.8%, 25세-29세 14.1%, 30세 이상 10.3%로 20대가 약 78.0% 이상을 차지함

<표 V-5> 장애유형별 연령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20세 미만	2(4.2)	8(10.5)	8(18.2)	5(19.2)	0(0)	23(10.8)
20세 - 24세	31(54.4)	52(68.4)	33(75.0)	16(61.5)	6(60.0)	138(64.8)
25세 - 29세	14(24.6)	11(14.5)	2(4.5)	3(11.5)	0(0)	30(14.1)
30세 이상	10(17.5)	5(6.6)	1(2.3)	2(7.7)	4(40.0)	22(10.3)
계	57(100.0)	76(100.0)	44(100.0)	26(100.0)	10(100.0)	213(100.0)

$\chi^2 = 33.908, df=12, p<.01$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 분석

1) 교육실태

(1)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참여 경험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V-1-23> [그림 V-1-14]와 같음
- 성인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86.0%, 성인교육을 1회라도 참여한 경우는 14.0%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인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발달장애 95.2%, 지적장애 88.9%, 정신장애 88.0%, 지체장애 77.6%순으로 나타남
- 교육을 받은 경우는 감각·기타 30.0%, 지체장애 22.4%, 정신장애 12.0%, 지적장애 11.1% 순임

<표 V-6>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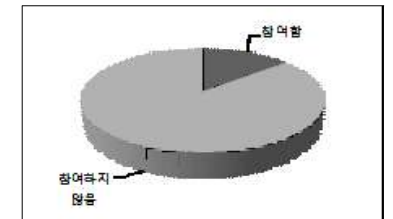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참여함	13(22.4)	8(11.1)	2(4.8)	3(12.0)	3(30.0)	29(14.0)
참여하지 않음	45(77.6)	64(88.9)	40(95.2)	22(88.0)	7(70.0)	178(86.0)
계	58(100.0)	72(100.0)	42(100.0)	25(100.0)	10(100.0)	207(100.0)

$\chi^2 = 9.090, df=4, p>.05$

<표 V-7> 성인교육 참여여부

문항	응답수	구성비
유효(결측)	207(0)	100
참여함	29	14.0
참여하지 않음	178	86.0



(2) 참여하지 않은 이유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V-1-25> [그림 V-1-15]에 제시됨
 -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28.8%, 평생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26.0%, 기타 19.8%, 원하는 프로그램 없어서 10.2%, 필요성을 못 느껴서 6.2%, 교육비가 부담되어서와 이동하기 어려워서 각각 4.5% 순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가 54.8%를 차지하여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함
-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0.0%, 정신장애 31.8%, 지체장애 27.3%, 지적장애 21.9%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았고, 정신장애 40.9%, 지적장애 25.0%, 발달장애 22.5%, 지체장애 20.5% 순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서라는 이유에 응답함

<표 V-8>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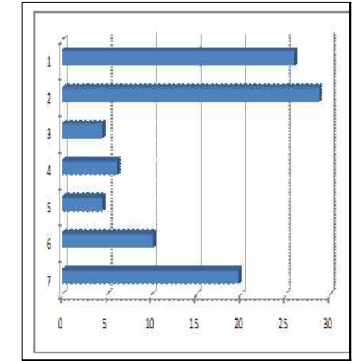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평생교육 들어본 적 없어서	9(20.5)	16(25.0)	9(22.5)	9(40.9)	3(42.9)	46(26.0)
평생교육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12(27.3)	14(21.9)	16(40.0)	7(31.8)	2(28.6)	51(28.8)
교육비가 부담되어	3(6.8)	1(1.6)	2(5.0)	1(4.5)	1(14.3)	8(4.5)
필요성을 못 느껴서	4(9.1)	4(6.3)	2(5.0)	0(0)	1(14.3)	11(6.2)
이동하기 어려워	3(6.8)	4(6.3)	1(2.5)	0(0)	0(0)	8(4.5)
원하는 프로그램 없어서	5(11.4)	8(12.5)	2(5.0)	3(13.6)	0(0)	18(10.2)
기타	8(18.2)	17(26.6)	8(20.0)	2(9.1)	0(0)	35(19.8)
계	44(100.0)	64(100.0)	40(100.0)	22(100.0)	7(100.0)	177(100.0)

$\chi^2 = 21.564, df=24, p>.05$

<표 V-9> 성인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문항	응답 수	구성비
유효(결측)	177(0)	100
1. 평생교육 들어본 적 없어서	46	26.0
2.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51	28.8
3. 교육비가 부담되어	8	4.5
4.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	6.2
5. 이동하기 어려워서	8	4.5
6.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8	10.2
7. 기타	35	19.8



(3) 교육기관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V-1-27> [그림 V-1-16]와 같음
 - 장애인 단체가 32.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 21.4%, 일반인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14.3%, 장애인 직업 전문학교와 기타가 각각 10.7%, 대학 장애인교육과 일반성인을 위한 학원 7.1%, 사회복지관과 장애성인을 위한 학원 3.6%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장애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89.2%, 일반기관(일반인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기관, 대학 일반성인 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관, 일반성인을 위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25%로 앞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일반기관에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단체에 교육받은 경우는 발달장애 50.0%, 지체장애 41.7%와 지적장애 37.5%로 나타남
 - 일반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감각·기타장애 66.7%, 지적장애 25%, 지체장애 18.9%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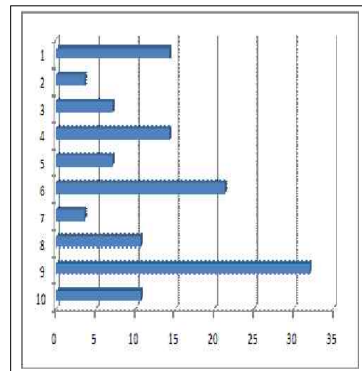
〈표 V-10〉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받은 기관(다중응답)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일반인과 함께 평생교육기관	1(8.3)	1(12.5)	0(0)	0(0)	2(66.7)	4(14.3)
사회복지관	1(8.3)	0(0)	0(0)	0(0)	0(0)	1(3.6)
일반성인을 위한 학원	1(8.3)	1(12.5)	0(0)	0(0)	0(0)	2(7.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2(16.7)	0(0)	1(50.0)	0(0)	1(33.3)	4(14.3)
대학 장애성인교육	1(8.3)	1(12.5)	0(0)	0(0)	0(0)	2(7.1)
장애인복지관	3(25.0)	2(25.0)	0(0)	1(33.3)	0(0)	6(21.4)
장애성인을 위한 학원	0(0)	0(0)	0(0)	1(33.3)	0(0)	1(3.6)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1(8.3)	0(0)	0(0)	1(33.3)	1(33.3)	3(10.7)
장애인 단체	5(41.7)	3(37.5)	1(50.0)	0(0)	0(0)	9(32.1)
기타	2(16.7)	1(12.5)	0(0)	0(0)	0(0)	3(10.7)

〈표 V-11〉 성인교육 받은 기관(다중응답)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일반인과 함께 평생교육기관	4	14.3
2. 사회복지관	1	3.6
3. 일반성인을 위한 학원	2	7.1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4	14.3
5. 대학 장애성인교육	2	7.1
6. 장애인복지관	6	21.4
7. 장애성인을 위한 학원	1	3.6
8.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3	10.7
9. 장애인 단체	9	32.1
10. 기타	3	10.7



(4) 참여 프로그램 내용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직업교육 48.3%로 가장 많았고, 여가교육 31.0%, 정보교육 27.6%, 문해교육 20.7%, 자립생활 17.2%, 교양교육 10.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감각·기타장애 66.7%, 지적장애 62.5%, 지체장애 53.8% 순으로 직업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달장애 50%, 지체장애 38.5%, 정신장애와 감각·기타장애가 각각 33.3%, 지적장애 12.5% 순으로 여가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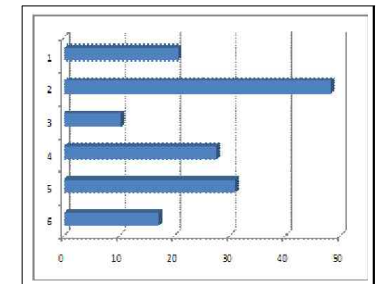
〈표 V-12〉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참여 프로그램(다중응답)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문해교육	3(23.1)	3(37.5)	0(0)	0(0)	0(0)	6(20.7)
직업교육	7(53.8)	5(62.5)	0(0)	0(0)	2(66.7)	14(48.3)
교양교육	2(15.4)	1(12.1)	0(0)	0(0)	0(0)	3(10.3)
정보교육	7(53.8)	1(12.5)	0(0)	0(0)	0(0)	8(27.6)
여가교육	5(38.5)	1(12.5)	1(50.0)	1(33.3)	1(33.3)	9(31.0)
자립생활	2(15.4)	1(12.5)	0(0)	2(66.7)	0(0)	5(17.2)

〈표 V-13〉 성인교육 참여 프로그램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문해교육	6	20.7
2. 직업교육	14	48.3
3. 교양교육	3	10.3
4. 정보교육	8	27.6
5. 여가교육	9	31.0
6. 자립생활	5	17.2



(5) 졸업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 총 참여횟수

- 응답자의 학교 졸업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별로 받은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빈도와 백분율은 <표 V -1-31> [그림 V -1-18]과 같음
- 없는 경우가 74.1%로 가장 많았고, 1회와 5회 이상 8.8%, 2회 5.9%, 4회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1회라도 받은 경우는 25.9%로 나타남
- 향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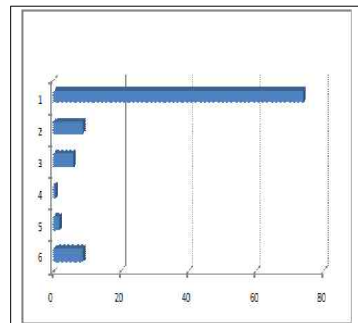
<표 V-14> 성인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

(단위 : 명, %)

대상 내용	문해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정보교육	여가교육	자립생활	전체
없음	24(82.8)	15(51.7)	26(89.7)	21(72.4)	19(65.5)	24(82.8)	129(74.1)
1회	2(6.9)	4(13.8)	1(3.4)	2(6.9)	4(13.8)	2(6.9)	15(8.8)
2회	2(6.9)	2(6.9)	1(3.4)	3(10.3)	2(6.9)	0(0)	10(5.9)
3회	0(0)	1(3.4)	0(0)	1(3.4)	0(0)	0(0)	1(0.6)
4회	0(0)	2(6.9)	0(0)	1(3.4)	0(0)	0(0)	3(1.8)
5회 이상	1(3.4)	5(17.2)	1(3.4)	1(3.4)	4(13.8)	3(10.3)	15(8.8)
계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174(100)

<표 V-15> 성인교육 프로그램 참여 횟수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없음	129	74.1
2. 1회	15	8.8
3. 2회	10	5.9
4. 3회	1	0.6
5. 4회	3	1.8
6. 5회 이상	15	8.8



(6) 프로그램 내용별 참여 회당 평균기간

- 응답자의 학교 졸업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별로 참여한 횟수 당 평균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빈도와 백분율은 <표 V -1-32> [그림 V -1-19]와 같음
- 없는 경우가 74.2%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 10.4%, 6개월 이하 8.0%, 1개월 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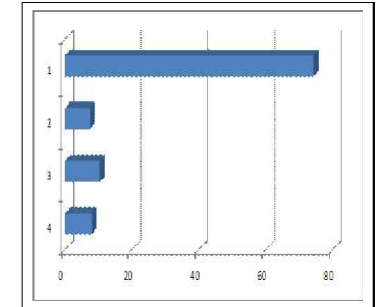
<표 V-16> 성인교육 프로그램별 참여기간

(단위 : 명, %)

대상 내용	문해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정보교육	여가교육	자립생활	전체
없음	24(82.8)	15(51.7)	26(89.7)	21(72.4)	19(65.5)	24(82.8)	129(74.2)
1개월 이하	2(6.9)	3(10.3)	1(3.4)	2(6.9)	4(13.8)	1(3.4)	13(7.5)
3개월 이하	3(10.3)	6(20.7)	1(3.4)	2(6.9)	2(6.9)	4(13.8)	18(10.4)
6개월 이하	0(0)	5(17.2)	1(3.4)	4(13.8)	4(13.8)	0(0)	14(8.0)
계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174(100)

<표 V-17> 성인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간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없음	129	74.2
2. 1개월 이하	13	7.5
3. 3개월 이하	18	10.4
4. 6개월 이하	14	8.0



(7) 교육비 부담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을 받는데 본인이 부담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무료가 53.6%이고, 월 5-10만원 미만 17.9%, 월 10-15만원 미만 10.7%, 월 5만원 미만과 월 20만원 미만이 7.1% 순으로 나타남

<표 V-18> 장애유형별 교육비 부담 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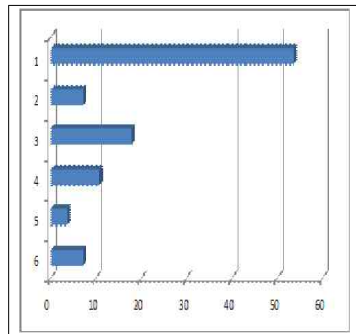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무 료	7(53.8)	3(42.9)	1(50.0)	3(100.0)	1(33.3)	15(53.6)
월 5만원 미만	0(0.0)	2(28.6)	0(0.0)	0(0.0)	0(0.0)	2(7.1)
월 5-10만원 미만	2(15.4)	1(14.3)	0(0.0)	0(0.0)	2(66.7)	5(17.9)
월 10-15만원 미만	1(7.7)	1(14.3)	1(50.0)	0(0.0)	0(0.0)	3(10.7)
월 15-20만원 미만	1(7.7)	0(0.0)	0(0.0)	0(0.0)	0(0.0)	1(3.6)
월 20만원 이상	2(15.4)	0(0.0)	0(0.0)	0(0.0)	0(0.0)	2(7.1)
계	13(100.0)	7(100.0)	2(100.0)	3(100.0)	3(100.0)	28(100.0)

$\chi^2 = 19.761$ df=20, p>.05

<표 V-19> 교육비 부담 액수

문 항	응답수	구성비
1. 없음	129	74.1
2. 1회	15	8.8
3. 2회	10	5.9
4. 3회	1	0.6
5. 4회	3	1.8
6. 5회 이상	15	8.8



(8)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의 교육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보통이 60.0%로 가장 많았고, 불만 10.0%, 만족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0%로 나타남
-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표 V-20>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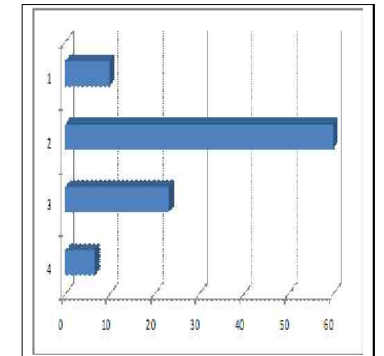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불만	1(7.7)	2(25.0)	0(0.0)	0(0.0)	0(0.0)	3(10.0)
보통	6(46.2)	5(62.5)	3(100.0)	2(66.7)	2(66.7)	18(60.0)
만족	5(38.5)	1(12.5)	0(0.0)	1(33.3)	0(0.0)	7(23.3)
매우만족	1(7.7)	0(0.0)	0(0.0)	0(0.0)	1(33.3)	2(6.7)
계	13(100.0)	8(100.0)	3(100.0)	3(100.0)	3(100.0)	30(100.0)

$\chi^2 = 11.397$ df=12, p>.05

<표 V-21>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문 항	응답수	구성비
1. 불만	3	10.0
2. 보통	18	60.0
3. 만족	7	23.3
4. 매우 만족	2	6.7



(9)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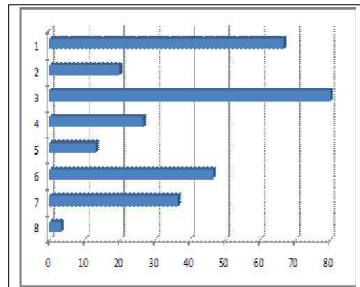
-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이 느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부족이 80.0%로 가장 많았고,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부족 66.7%, 이동의 어려움 46.7%,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36.7%, 강사의 전문성 부족 26.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 20%, 교육비 부담 13.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영역별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부족이 발달·정신장애 100%, 지체장애 84.6%, 지적장애 75% 순으로 나타남

<표 V-22> 장애유형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선점(다중응답)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평생교육 제공 시설·기관의 부족	8(61.5)	5(62.5)	3(100)	3(100)	1(33.3)	20(66.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	5(38.5)	0(0)	0(0)	0(0)	1(33.3)	6(20.0)
장애인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11(84.6)	6(75)	3(100)	3(100)	1(33.3)	24(80.0)
강사의 전문성 부족	2(15.4)	3(37.5)	1(33.3)	1(33.3)	1(33.3)	8(26.7)
교육비 부담	1(7.7)	1(12.5)	2(66.7)	0(0)	0(0)	4(13.3)
이동의 어려움	7(53.8)	5(62.5)	0(0)	0(0)	2(66.7)	14(46.7)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4(30.8)	3(37.5)	0(0)	2(86.7)	2(66.7)	11(36.7)
기타	1(7.7)	0(0)	0(0)	0(0)	0(0)	1(3.3)

<표 V-23>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선점(다중응답)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평생교육 기관 부족	4	14.3
2. 사회복지관	1	3.6
3. 일반성인을 위한 학원	2	7.1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4	14.3
5. 대학 장애성인교육	2	7.1
6. 장애인복지관	6	21.4
7. 장애성인을 위한 학원	1	3.6
8.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3	10.7



2) 평생교육 요구 분석

(1)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 향후 장애성인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은지에 관한 조사결과
- 일반인과 함께(통합형)와 장애성인만을 대상(분리형)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혼합형이 47.6%로 가장 선호하였고, 장애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형 성인교육 26.4%, 일반인과 함께하는 통합형 성인교육 23.6% 순으로 나타남
- 기타 2.4%의 내용은 장애등급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9%, 감각·기타장애 50.0%, 발달장애 46.5%, 정신장애 44.0% 순으로 혼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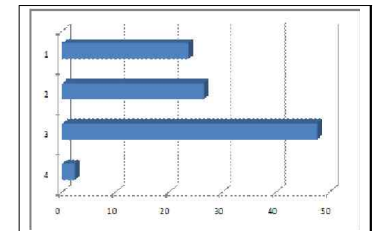
<표 V-24>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일반인과 함께(통합형)	10(20.8)	25(34.2)	9(20.9)	3(12.0)	2(20.0)	49(23.6)
장애성인만을 대상으로(분리형)	13(22.8)	17(23.3)	13(30.2)	9(36.0)	3(30.0)	55(26.4)
혼합형태	33(57.9)	30(41.1)	20(46.5)	11(44.0)	5(50.0)	99(47.6)
기타	1(1.8)	1(1.4)	1(2.3)	2(8.0)	0(0)	5(2.4)
계	57(100.0)	73(100.0)	43(100.0)	25(100.0)	10(100.0)	208(100.0)

$\chi^2 = 13.650, df=12, p>.05$

<표 V-25> 프로그램 운영 형태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일반인과 함께 (통합형)	49	23.6
2. 장애성인만을 대상으로(분리형)	55	26.4
3. 혼합형태	99	47.6
4. 기타	5	2.4



(2) 받고 싶은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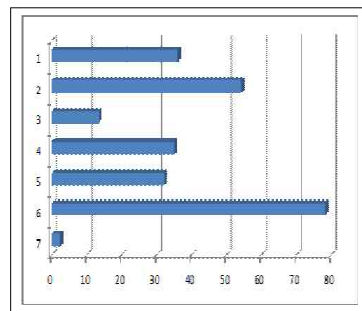
- 향후 가장 받고 싶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자립생활 78.4%, 직업교육 54.3%, 문해교육 36.1%, 정보교육 35.1%, 여가교육 32.2%, 교양교육 13.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2.4%의 내용은 운동프로그램, 건강관리, 음악활동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등이었음
 -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직업교육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롭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줌

<표 V-26> 장애유형별 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다중응답)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문해교육	16(28.1)	36(48.0)	15(35.7)	8(32.0)	0(0)	75(36.1)
직업교육	26(45.6)	46(61.3)	24(57.1)	12(48.0)	5(55.6)	113(54.3)
교양교육	10(17.5)	9(12.0)	4(9.5)	2(8.0)	3(33.3)	28(13.5)
정보교육	31(54.4)	24(32.0)	7(16.7)	7(28.0)	4(44.4)	73(35.1)
여가교육	19(33.3)	23(30.7)	16(38.1)	6(24.0)	3(33.3)	67(32.2)
자립생활	40(70.2)	59(78.7)	37(88.1)	22(88.0)	5(55.6)	163(78.4)
기타	1(1.8)	2(2.7)	2(4.8)	0(0)	0(0)	5(2.4)

<표 V-27> 받고 싶은 프로그램(다중응답)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문해교육	75	36.1
2. 직업교육	113	54.3
3. 교양교육	28	13.5
4. 정보교육	73	35.1
5. 여가교육	67	32.2
6. 자립생활	163	78.4
7. 기타	5	2.4



(3) 프로그램 운영기간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1년 이상 38.5%, 6개월 이상-1년 미만 32.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9.5%, 3개월 미만 5.4%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길수록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감각·기타장애 44.4%, 정신장애 44.0%, 발달장애 43.9%, 지체장애 38.2%, 지적장애 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의 경우 6개월 이상-1년 미만 42.7%고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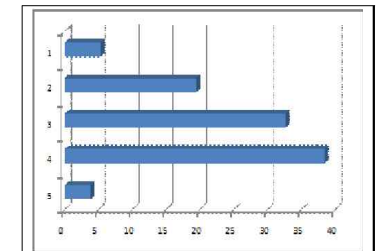
<표 V-28> 장애유형별 강제당 희망하는 운영 기간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3개월 미만	4(7.3)	2(2.7)	2(4.9)	2(8.0)	1(11.1)	11(5.4)
3개월-6개월 미만	12(21.8)	13(17.3)	8(19.5)	5(20.0)	2(22.2)	40(19.5)
6개월-1년 미만	16(29.1)	32(42.7)	11(26.8)	6(24.0)	2(22.2)	67(32.7)
1년 이상	21(38.2)	25(33.3)	18(43.9)	11(44.0)	4(44.4)	79(38.5)
기타	2(3.6)	3(4.0)	2(4.9)	1(4.0)	0(0)	8(3.9)
계	55(100.0)	75(100.0)	41(100.0)	25(100.0)	9(100.0)	205(100.0)

$\chi^2 = 8.042, df=16, p>.05$

<표 V-29> 프로그램 운영기간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3개월 미만	11	5.4
2. 3개월-6개월 미만	40	19.5
3. 6개월-1년 미만	67	32.7
4. 1년 이상	79	38.5
5. 기타	8	3.9



(4) 주당 운영 횟수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한 주당 운영하는 횟수는
 - 3회 40.9%, 2회 27.4%, 5회 19.2%, 4회 7.7%, 1회 4.8% 순으로, 한 주에 3회 이상이 67.8%임
 - 장애유형별로는 감각·기타장애 77.8%, 발달장애 74.5%, 지체장애 71.9%, 정신장애 64.0%, 지적장애 60.8%로 3회를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표 V-30>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주당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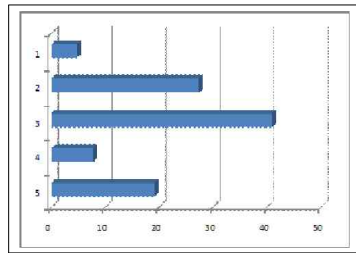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1회	2(3.5)	5(6.8)	1(2.3)	2(8.0)	0(0)	10(4.8)
2회	14(24.6)	24(32.4)	10(23.3)	7(28.0)	2(22.2)	57(27.4)
3회	29(50.9)	24(32.4)	19(44.2)	7(28.0)	6(66.7)	85(40.9)
4회	6(10.5)	8(10.8)	2(4.7)	0(0)	0(0)	16(7.7)
5회	6(10.5)	13(17.6)	11(25.6)	9(36.0)	1(11.1)	40(19.2)
계	57(100.0)	74(100.0)	43(100.0)	25(100.0)	9(100.0)	208(100.0)

$\chi^2 = 20.673, df=16, p>.05$

<표 V-31> 프로그램 1강좌 주당 횟수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1회	10	4.8
2. 2회	57	27.4
3. 3회	85	40.9
4. 4회	16	7.7
5. 5회	40	19.2



(5) 1일 운영시간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성인교육 프로그램 강좌 당 하루 운영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3시간 29.2%, 2시간 26.8%, 1시간 14.4%, 4시간 10.5%, 5시간 10.1%, 6시간이상 9.1% 순으로, 하루에 2~3시간이 56.0%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32.9%, 정신장애 32.0%, 발달장애 31.0% 순으로 3시간을 희망하였고, 감각·기타장애 44.4%, 지체장애 33.3%, 정신장애 32.0%, 발달장애 31.0%로 2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2>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1일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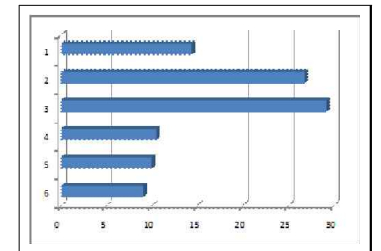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1시간	10(17.5)	15(19.7)	2(4.8)	3(12.0)	0(0)	30(14.4)
2시간	19(33.3)	13(17.1)	12(28.6)	8(32.0)	4(44.4)	56(26.8)
3시간	13(22.8)	25(32.9)	13(31.0)	8(32.0)	2(22.2)	61(29.2)
4시간	8(14.0)	8(10.5)	5(11.9)	0(0)	1(11.1)	22(10.5)
5시간	4(7.0)	9(11.8)	4(9.5)	2(8.0)	2(22.2)	21(10.0)
6시간	3(5.3)	6(7.9)	6(14.3)	4(16.0)	0(0)	19(9.1)
계	57(100.0)	76(100.0)	42(100.0)	25(100.0)	9(100.0)	209(100.0)

$\chi^2 = 22.356, df=20, p>.05$

<표 V-33> 1일 운영시간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1시간	30	14.4
2. 2시간	56	26.8
3. 3시간	61	29.2
4. 4시간	22	10.5
5. 5시간	21	10.0
6. 6시간	19	9.1



(6) 월 교육비 부담액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본인이 부담할 교육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무료가 44.7%로 가장 많았고, 월 5만원 미만 33.5%, 월 5-10만원 미만 13.6%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장애유형별로 감각기타장애 55.6%, 정신장애 50.0%, 지적장애 48.7%, 지체장애 41.1%, 발달장애 36.6% 순으로 교육비 없음을 희망하였고, 지체장애 41.1%, 발달장애 34.1%, 지체장애 32.9%, 정신장애 20.8%, 감각기타장애 22.2% 순으로 월 10만원 미만의 월 교육비를 지급하며 장애성인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4> 장애유형별 희망하는 교육비 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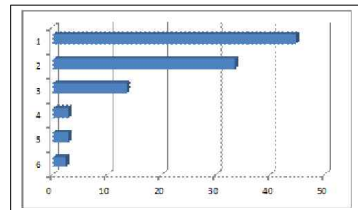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무 료	23(41.1)	37(48.7)	15(36.6)	12(50.0)	5(55.6)	92(44.7)
월 5만원 미만	23(41.1)	25(32.9)	14(34.1)	5(20.8)	2(22.2)	69(33.5)
월5-10만원 미만	5(8.9)	7(9.2)	12(29.3)	4(16.7)	0(0)	28(13.6)
월10-15만원 미만	2(3.6)	3(3.9)	0(0)	0(0)	1(11.1)	6(2.9)
월15만원-20만원미만	1(1.8)	3(3.9)	0(0)	1(4.2)	1(11.1)	6(2.9)
기타	2(3.6)	1(1.3)	0(0)	2(8.3)	0(0)	5(2.4)
계	56(100.0)	76(100.0)	41(100.0)	24(100.0)	9(100.0)	206(100.0)

$\chi^2 = 28.273, df=20, p>.05$

<표 V-35> 월 교육비 부담액

문 항	응답수	구성비
1. 무 료	92	44.7
2. 월 5만원 미만	69	33.5
3. 월5-10만원 미만	28	13.6
4. 월10-15만원 미만	6	2.9
5. 월15-20만원 미만	6	2.9
6. 기타	5	2.4



(7) 강사 소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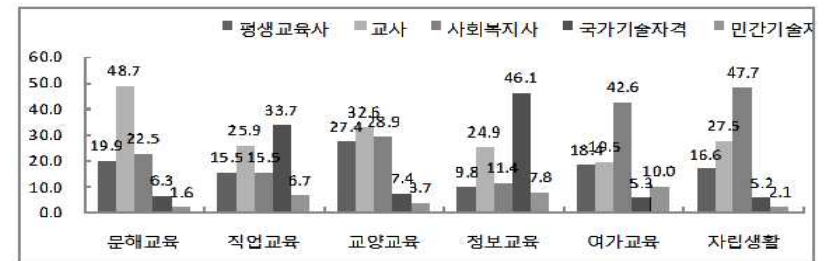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강사의 소지자격이 어떠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교사 48.7%, 사회복지사 22.5%, 평생교육사 19.9%, 국가기술자격 6.3% 순으로 문해교육의 강사자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가기술자격 33.7%, 교사 25.9%,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 15.5% 순으로 직업교육의 강사자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교사 32.6%, 사회복지사 28.9%, 평생교육사 27.4% 순으로 교양교육의 강사자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36> 성인교육 프로그램별 희망하는 강사 소지자격

(단위 : 명, %)

대상 내용	문해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정보교육	여가교육	자립생활
평생교육사	38(19.9)	30(15.5)	52(27.4)	19(9.8)	35(18.4)	32(16.6)
교사	93(48.7)	50(25.9)	62(32.6)	48(24.9)	37(19.5)	53(27.5)
사회복지사	43(22.5)	30(15.5)	55(28.9)	22(11.4)	81(42.6)	92(47.7)
국가기술자격	12(6.3)	65(33.7)	14(7.4)	89(46.1)	10(5.3)	10(5.2)
민간기술자격	3(1.6)	13(6.7)	7(3.7)	15(7.8)	19(10.0)	4(2.1)
기타	2(1.0)	5(2.6)	0(0)	0(0)	8(4.2)	2(1.0)
계	191(100.0)	193(100.0)	190(100.0)	193(100.0)	190(100.0)	193(100.0)

<그림 V-1> 강사소지자격



(8) 전문기관 설립 여부

-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설립이 필요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필요하다 93.8%, 필요하지 않다 6.2%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감각기타장애 100%, 발달장애 97.6%, 지적장애 96.1%, 지체장애 89.7%, 정신장애 88.5%로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비율로 전문기관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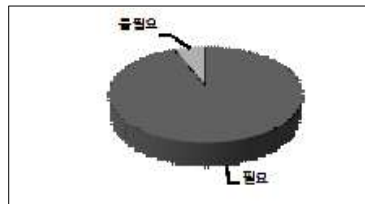
<표 V-37> 장애유형별 장애성인교육 전문기관설립 여부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필요	52(89.7)	73(96.1)	41(97.6)	23(88.5)	9(100.0)	198(93.8)
불필요	6(10.3)	3(3.9)	1(2.4)	3(11.5)	0(0)	13(6.2)
계	58(100.0)	76(100.0)	42(100.0)	26(100.0)	9(100.0)	211(100.0)

$\chi^2 = 5.329, df=4, p>.05$

<표 V-38>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문항	응답수	구성비
필요	198	93.8
불필요	13	6.2



(9) 장애성인 교육 전문기관의 중점 수행 기능

-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설립 된다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장애특성별 프로그램 수집 개발 보급이 75.3%로 가장 많았고, 교수학습 자료 수집 개발 보급 57.2%, 장애평생교육 인식변화 홍보 50.0%,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 48.5%,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 35.6%, 지역사회 내 요구조사 28.9%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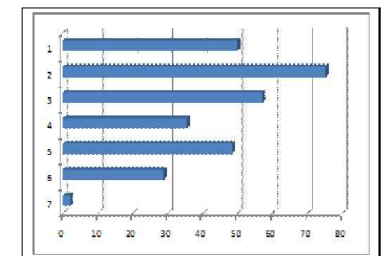
- 장애유형별로 감각기타장애 87.5%, 발달장애 80.5%, 지적장애 77.8%, 정신장애 72.7%, 지체장애 66.9% 순으로 장애 특성별 프로그램 수집 개발 보급을 최우선 기능으로 나타났고, 지적장애 63.9%, 감각기타장애 62.5%, 발달장애 53.7%, 지체장애 52.9%, 정신장애 50.0% 순으로 교수학습 자료 수집 개발 보급을 그 다음 기능으로 나타남

<표 V-39> 장애유형별 장애성인교육 전문기관의 중점 수행기능(다중응답)
(단위 : 명, %)

대상 내용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감각기타	전체
장애평생교육 인식 변화 홍보	28(54.9)	25(34.7)	27(65.9)	15(68.2)	2(25.0)	97(50.0)
장애 특성별 프로그램 수집 개발 보급	34(66.7)	56(77.8)	33(80.5)	16(72.7)	7(87.5)	146(75.3)
교수학습 자료 수집 개발 보급	27(52.9)	46(63.9)	22(53.7)	11(50.0)	5(62.5)	111(57.2)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	17(33.3)	24(33.3)	14(34.1)	9(40.9)	5(62.5)	69(35.6)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	25(49.0)	40(55.6)	17(41.5)	9(40.9)	3(37.5)	94(48.5)
지역사회 내 요구조사	17(33.3)	23(31.9)	9(22.0)	5(22.7)	2(25.0)	56(28.9)
기타	3(5.9)	0(0)	1(2.4)	0(0)	0(0)	4(2.1)

<표 V-40> 장애성인교육 전문기관의 중점수행 기능(다중응답)

문항	응답수	구성비
1. 장애평생교육 인식 변화 홍보	97	50.0
2. 장애특성별 프로그램 보급	146	75.3
3. 교수학습자료수집개발보급	111	57.2
4.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	69	35.6
5. 관련기관간 연계 협력	94	48.5
6. 지역사회 내 요구조사	56	28.9
7. 기타	4	2.1



제2절 일반 평생교육관련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분석

1. 조사기관 일반현황

- 자료분석에 사용된 202개의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공공평생교육기관이 158개(78.2%), 민간평생교육기관은 44개(21.8%)로 공공평생교육기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가 80개(39.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비영리형 평생교육기관인 시민사회단체가 20개(9.9%), 영리형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센터가 17개(8.4%)를 차지함
-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전문학원, 원격교육기관은 각각 2개씩 조사되었는데 이들 기관은 낮은 빈도로 인해 해당기관들의 분석내용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참고자료로만 사용

〈표 V-41〉 조사대상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빈도	%
공공평생교육기관	학교형평생교육기관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2	1.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12	5.9
	평생교육전담기관	시·구 평생학습관	11	5.4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	80	39.6
	복합형 평생교육기관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2	1.0
		도서관 및 박물관	16	7.9
		사회복지기관	35	17.3
공공평생교육기관 전체			158	78.2
민간평생교육기관	비영리형 평생교육기관	비영리학력인정시설	3	1.5
		시민사회단체	20	9.9
	영리형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17	8.4
		전문학원	2	1.0
		원격교육기관	2	1.0
	민간평생교육기관 전체			44
전체			202	100.0

- 각 기관들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서구가 30.2%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13.9%로 가장 적음
- 시·구 평생학습관 등의 전담평생교육기관은 36.2%로 중구가 가장 많았고 도서관 및 박물관은 31.3%로 동구와 유성구에서 많이 조사됨
- 사회복지기관은 동구에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28.6%) 비영리형 평생교육기관인 시민사회단체는 서구의 비율이 높았고(50%) 영리형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센터는 유성구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에서는 하나도 조사되지 않음
- 공공평생교육기관과 민간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소재지 분포를 살펴보면 공공평생교육기관은 서구와 동구가 각각 26.6%와 25.9%로 많이 나타났고 유성구가 13.9%로 가장 적었다. 민간평생교육기관은 서구가 43.2%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덕구에서 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V-42〉 조사대상 평생교육 기관의 소재지

(단위 : 개, %)

구분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총(%)	
전체	61(30.2)	38(18.8)	46(22.8)	29(14.4)	28(13.9)	202(100.0)	
기관 유형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1(50.0)			1(50.0)	2(100.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3(25.0)	2(16.7)	2(16.7)	3(25.0)	2(16.7)	12(100.0)
	전담 평생교육기관	2(18.2)	4(36.4)	2(18.2)	1(9.1)	2(18.2)	11(100.0)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	24(30.0)	15(18.8)	21(26.3)	8(10.0)	12(15.0)	80(100.0)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1(50.0)		1(50.0)			2(100.0)
	도서관 및 박물관	3(18.8)	1(6.3)	5(31.3)	5(31.3)	2(12.5)	16(100.0)
	사회복지기관	8(22.9)	5(14.3)	10(28.6)	4(11.4)	8(22.9)	35(100.0)
	비영리학력인정시설	1(33.3)	2(66.7)				3(100.0)
	시민사회단체	10(50.0)	5(25.0)	3(15.0)	1(5.0)	1(5.0)	20(100.0)
	문화센터	5(29.4)	4(23.5)	2(11.8)	6(35.3)		17(100.0)
	전문학원	1(50.0)				1(50.0)	2(100.0)
	원격교육기관	2(100.0)					2(100.0)
기관 분류	공공평생교육기관	42(26.6)	27(17.1)	41(25.9)	22(13.9)	26(16.5)	158(100.0)
	민간평생교육기관	19(43.2)	11(25.0)	5(11.4)	7(15.9)	2(4.5)	44(100.0)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장애인관련교육 강좌수

- 장애인 관련 교육의 강좌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평생교육기관의 91.1%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장애인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음
- 기관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련교육 강좌수는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전담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및 박물관, 비영리학력인정시설, 문화센터, 전문학원, 원격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관련교육 강좌가 단 한개도 조사되지 않음
- 반면 여성 및 노인평생교육기관은 조사대상 두 곳 중 한곳은 1개가 운영되고 있었고 사회복지기관이 장애인관련교육 강좌수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로 조사됨

〈표 V-43〉 장애인관련교육 강좌수

(단위 : 개, %)

구 분		없음 (%)	1개 (%)	2-5개미만 (%)	5개이상-10개미만 (%)	10개이상-20미만 (%)	전체 (%)
전 체		184(91.1)	11(5.4)	3(1.5)	3(1.5)	1(0.5)	202(100.0)
기관 유형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2(100.0)					2(100.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11(91.7)	1(8.3)				12(100.0)
	전담 평생교육기관	11(100.0)					11(100.0)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	78(97.5)	2(2.5)				80(100.0)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1(50.0)	1(50.0)				2(100.0)
	도서관 및 박물관	16(100.0)					16(100.0)
	사회복지기관	24(68.6)	6(17.1)	3(8.6)	1(2.9)	1(2.9)	35(100.0)
	비영리학력인정시설	3(100.0)					3(100.0)
	시민사회단체	17(85.0)	1(5.0)		2(10.0)		20(100.0)
	문화센터	17(100.0)					17(100.0)
	전문학원	2(100.0)					2(100.0)
	원격교육기관	2(100.0)					2(100.0)
	기관 분류	공공평생교육기관	143(90.5)	10(6.3)	3(1.9)	1(0.6)	1(0.6)
민간평생교육기관		41(93.2)	1(2.3)		2(4.5)		44(100.0)
소재지	서구	55(90.2)	4(6.6)	1(1.6)	1(1.6)		61(100.0)
	중구	36(94.7)	1(2.6)	1(2.6)			38(100.0)
	동구	42(91.3)	2(4.3)		2(4.3)		46(100.0)
	유성구	27(93.1)	1(3.4)			1(3.4)	29(100.0)
	대덕구	24(85.7)	3(10.7)	1(3.6)			28(100.0)

2) 장애인 관련교육 수강인원

- 조사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관련교육 강좌의 수강인원을 보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에 따른 장애인 관련교육 강좌 수강인원을 보면 장애인 관련교육 강좌가 다른 유형의 기관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사회복지기관과 여성·노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관련교육 수강인원이 월평균 100명 미만이라 대답한 기관의 비율이 높았음

〈표 V-44〉 장애인 관련교육 월평균 수강인원

(단위 : 개, %)

구 분		강좌없음 (%)	100명미만 (%)	100명-500명 미만 (%)	전체 (%)
전 체		184(91.1)	14(6.9)	4(2.0)	202(100.0)
기관 유형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2(100.0)			2(100.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11(91.7)	1(8.3)		12(100.0)
	전담 평생교육기관	11(100.0)			11(100.0)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	78(97.5)	2(2.5)		80(100.0)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1(50.0)	1(50.0)		2(100.0)
	도서관 및 박물관	16(100.0)			16(100.0)
	사회복지기관	24(68.6)	8(22.9)	3(8.6)	35(100.0)
	비영리학력인정시설	3(100.0)			3(100.0)
	시민사회단체	17(85.0)	2(10.0)	1(5.0)	20(100.0)
	문화센터	17(100.0)			17(100.0)
	전문학원	2(100.0)			2(100.0)
	원격교육기관	2(100.0)			2(100.0)
	기관 분류	공공평생교육기관	143(90.5)	12(7.6)	3(1.9)
민간평생교육기관		41(93.2)	2(4.5)	1(2.3)	44(100.0)
소재지	서구	55(90.2)	6(9.8)		61(100.0)
	중구	36(94.7)	2(5.3)		38(100.0)
	동구	42(91.3)	1(2.2)	3(6.5)	46(100.0)
	유성구	27(93.1)	1(3.4)	1(3.4)	29(100.0)
	대덕구	24(85.7)	4(14.3)		28(100.0)

3) 장애인 관련교육 수강료

- 장애인 관련교육 강좌는 조사대상 기관 중 1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조사대상 기관의 장애인관련 수강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무료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함
- 기관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련교육 강좌의 수강료를 보면 장애인 관련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와 시민사회단체는 조사대상 기관 모두 무료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반해 조사대상 기관 중 장애인 관련교육을 진행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은 모두 3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공공평생교육기관과 민간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장애인관련 강좌는 장애인관련 교육 강좌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민간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모두 무료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표 V-45> 장애인 관련교육 월평균 수강료

(단위 : 개, %)

구 분		무료 (%)	1만원미만(%)	3만원~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전체 (%)
전체		12(66.7)	1(5.6)	2(11.1)	3(16.7)	18(100.0)
기관유형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0(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1(100.0)		1(100.0)
	전담 평생교육기관					0(0)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	2(100.0)				2(100.0)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1(100.0)	1(100.0)
	도서관 및 박물관					0(0)
	사회복지기관	7(63.6)	1(9.1)	1(9.1)	2(18.2)	11(100.0)
	비영리학력인정시설					0(0)
	시민사회단체	3(100.0)				3(100.0)
	문화센터					0(0)
	전문학원					0(0)
	원격교육기관					0(0)
	기관분류	공공평생교육기관	9(60.0)	1(6.7)	2(13.3)	3(20.0)
민간평생교육기관		3(100.0)				3(100.0)
소재지	서구	4(66.7)			2(33.3)	6(100.0)
	중구	2(100.0)				2(100.0)
	동구	3(75.0)	1(25.0)			4(100.0)
	유성구			1(50.0)	1(50.0)	2(100.0)
	대덕구	3(75.0)		1(25.0)		4(100.0)

4)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 장애인관련 교육의 강사료 평균은 13,800원으로 조사되었고 강사료가 무료라는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3만원 미만이 그 다음 순임
- 기관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를 보면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에서 조사된 기관 1곳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반면 주민센터의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는 모두 무료로 조사됨

<표 V-46>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기관유형 별)

(단위 : 개, %)

구 분		무료(%)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N	M	SD
전체		9(50.0)	5(27.8)	3(16.7)	1(5.6)	18	1.38	1.62
기관유형	초,중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0	.	.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1(100.0)			1	2.30	.
	전담 평생교육기관					0	.	.
	시,구 구민회관 및 주민센터	2(100.0)				2	0.00	0.00
	여성,노인평생교육기관				1(100.0)	1	5.00	.
	도서관 및 박물관					0	.	.
	사회복지기관	6(54.5)	3(27.3)	2(18.2)		11	1.18	1.49
	비영리학력인정시설					0	.	.
	시민사회단체	1(33.3)	1(33.3)	1(33.3)		3	1.50	1.50
	문화센터					0	.	.
	전문학원					0	.	.
	원격교육기관					0	.	.

- 공공평생교육기관과 민간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를 보면 강사료가 무료라는 비율이 공공평생교육기관이 민간평생교육기관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균에서는 민간평생교육기관이 공공평생교육기관보다 약간 높게 조사됨

〈표 V-47〉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기관분류 별)

(단위 : 개, %)

구 분		무료 (%)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미만(%)	5만원~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N	M	SD
기관 분류	공공평생교육기관	8(53.3)	4(26.7)	2(13.3)	1(6.7)		15	1.35	1.70
	민간평생교육기관	1(33.3)	1(33.3)	1(33.3)			3	1.50	1.50

- 지역에 따른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를 보면 서구가 25,800원으로 다른 지역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중구와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관련교육의 강사료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

〈표 V-48〉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 (소재지 별)

(단위 : 개, %)

구 분		무료 (%)	3만원미만 (%)	3만원~5만원미만(%)	5만원~10만원미만(%)	N	M	SD
소재지	서구		4(66.7)	1(16.7)	1(16.7)	6	2.58	1.32
	중구	2(100.0)				2	0.00	0.00
	동구	4(100.0)				4	0.00	0.00
	유성구	1(50.0)		1(50.0)		2	2.00	2.83
	대덕구	2(50.0)	1(25.0)	1(25.0)		4	1.33	1.56

- 운영재원에 따른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는 수강생들의 교육수강료로 운영되는 기관의 강사료가 36,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체기금조성과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의 장애인관련교육 강사료는 모두 무료로 조사됨

제3절 장애성인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요구도 분석

1. 조사기관 일반현황

- 자료분석에 활용한 응답기관은 총 16개 기관으로 표본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었음
- 응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은 〈표 V-52〉와 같음
 -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또는 복지법인 50%, 민간시설기관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8.8%로 조사되어 사단법인 또는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V-49〉 주요대상 기관별 운영 주체

(단위 : 개소, %)

대상 내용	기관수(구성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18.8)
사단법인 또는 복지법인	8(50.0)
민간시설기관	4(25.0)
기타	1(6.3)
계	16(100)

2. 조사 및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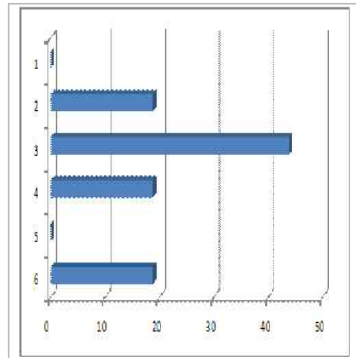
1) 수강생 구성

(1) 주요 대상 연령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인 응답기관의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연령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본 결과
 - 30-40세 미만 43.8%, 20-30세 미만과 40-50세 미만 18.8% 순으로 나타남
 -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30대, 40대를 대상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장애성인들이 학교 졸업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표 V-50〉 수강생 연령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20세 미만	0	0
2. 20-30세 미만	3	18.8
3. 30-40세 미만	7	43.8
4. 40-50세 미만	3	18.8
5. 50세 이상	0	0
6. 기타	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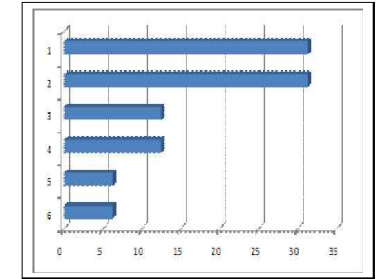


(2) 수강생 전체규모

- 응답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생 전체규모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면
 - 20명미만과 20명이상-30명미만이 31.3%, 40명이상-60명미만과 60명미만-80명미만이 12.2%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V-51〉 수강생 규모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20명 미만	5	31.3
2. 20명 이상-40명 미만	5	31.3
3. 40명 이상-60명 미만	2	12.5
4. 60명 이상-80명 미만	2	12.5
5. 80명 이상-100명 미만	1	6.3
6. 100명 이상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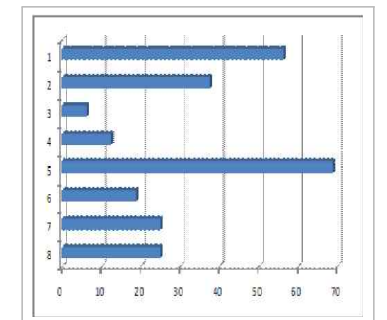


(3) 수강생 장애유형

- 응답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장애유형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보면
 - 지적장애 11명 68.8%, 지체장애 9명으로 56.3%, 뇌병변장애 6명 37.5%, 정신장애 4명으로 25%, 발달장애 3명으로 18.8%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면에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같은 감각장애가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음
 -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 장애인도 집에서 가까운 지역사회 내의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표 V-52〉 수강생 장애유형(다중응답)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지체장애	9	56.3
2. 뇌병변장애	6	37.5
3. 시각장애	1	6.3
4. 언어장애	2	12.5
5. 지적장애	11	68.8
6. 발달장애	3	18.8
7. 정신장애	4	25.0
8. 기타	4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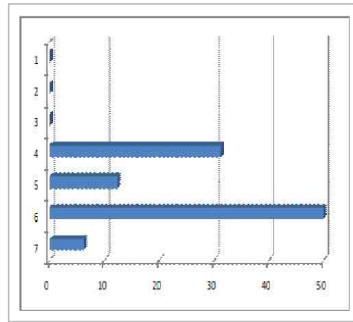
2) 운영 실태

(1) 시설형태

- 응답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형태는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결과
 - 장애인복지관 8개 기관으로 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 기관으로 31.3%, 장애인복지시설 2개 기관 12.5% 순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시설형태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일반 평생학습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표 V-53> 시설운영 형태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학습관	0	0
2. 부설 평생교육시설	0	0
3. 사회복지관	0	0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	31.3
5. 장애인복지시설	2	12.5
6. 장애인복지관	8	50.0
7. 기타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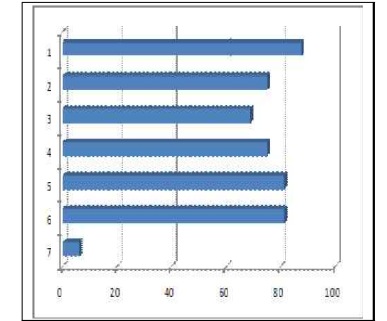


(2) 편의시설 설치 현황

- 응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승강기 또는 경사로 87.5%, 장애인용 대소변기와 장애인 주차장 81.3%,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복도 손잡이 75%, 출입구 출입문 68.8% 순으로 대부분 60%이상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장애인 대상기관임을 감안할 때, 100%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제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표 V-54> 장애인 편의시설(다중응답)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승강기 또는 경사로	14	87.5
2.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2	75.0
3. 출입구 출입문	11	68.8
4. 복도 손잡이	12	75.0
5. 장애인용 대소변기	13	81.3
6. 장애인 주차장	13	81.3
7. 기타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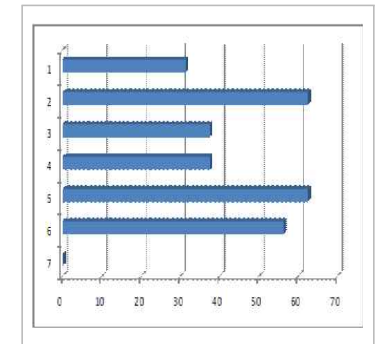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직업교육과 여가교육이 6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립생활 56.3%, 교양교육과 정보교육이 37.5%, 문해교육 31.3%정도로 나타남
 - 앞 절에서 살펴본 일반성인대상 기관에 비해 장애인대상 기관은 구직을 위한 직업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5> 프로그램 운영내용(다중응답)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문해교육	5	31.3
2. 직업교육	10	62.5
3. 교양교육	6	37.5
4. 정보교육	6	37.5
5. 여가교육	10	62.5
6. 자립생활	9	56.3
7. 기타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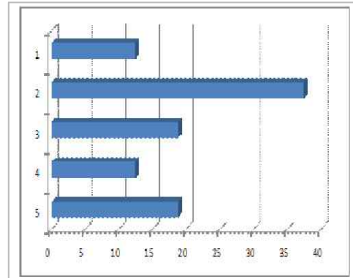


(4) 프로그램 1강좌 운영기간

- 응답기관에서 통상 교육프로그램의 1강좌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3개월 이상-6개월미만 37.5%, 6개월 이상-1년 미만 18.8%, 3개월 미만과 1년 이상의 12.5% 순으로, 일반성인대상 기관에 비하여 장기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V-56> 프로그램 1강좌 운영기간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3개월 미만	2	12.5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37.5
3. 6개월 이상-1년 미만	3	18.8
4. 1년 이상	2	12.5
5. 기타	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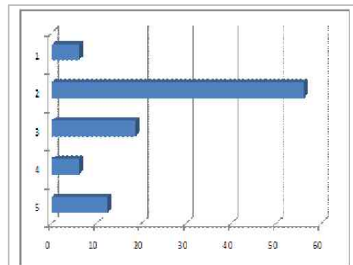


(5) 프로그램 1강좌당 하루 운영시간

- 응답기관에서 통상 교육프로그램의 1강좌당 하루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2시간이 주를 이루며 3시간, 6시간, 1시간, 5시간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표 V-57> 프로그램 1강좌 1일 운영시간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1시간	1	6.3
2. 2시간	9	56.3
3. 3시간	3	18.8
4. 5시간	1	6.3
5. 6시간	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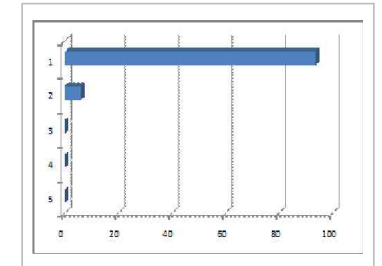


(6) 수강생 부담 월 교육비

- 수강생이 부담하는 월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교육비가 없는 경우가 93.8%, 월 5만원 미만이 6.3%로 나타나 대부분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 수강생 1인당 월 교육비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무료	15	93.8
2. 월 5만원 미만	1	6.3
3. 월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0	0
4. 월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0	0
5. 월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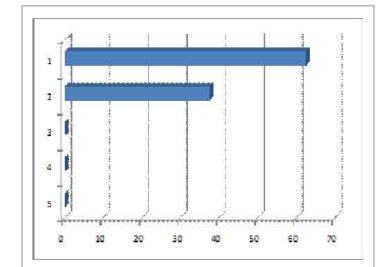


(7) 프로그램 담당 강사인원

-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인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5명 미만 기관이 62.5%, 5-10명인 기관이 37.5%로 나타남
 - 장애인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개별화교육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강사 지원이 시급함

<표 V-59> 프로그램 담당 강사인원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5명 미만	10	62.5
2. 5-10명	6	37.5
3. 11-15명	0	0
4. 16-20명	0	0
5. 21명 이상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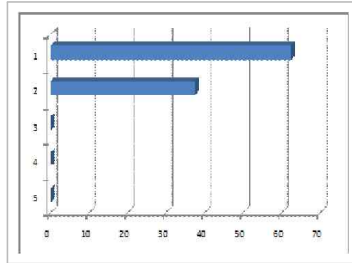


(8) 강사소지자격

-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사회복지사 75%, 민간기술자격 50%, 국가기술자격 31.3% 순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장 높은 반면, 평생교육사나 교사는 부족하여 보다 전문성이 있는 강사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V-60> 강사 소지자격(다중응답)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없음	1	6.3
2. 평생교육사	1	6.3
3. 교사	1	6.3
4. 사회복지사	12	75.0
5. 국가기술자격	5	31.3
6. 국가기술자격	8	50.0
7. 민간기술자격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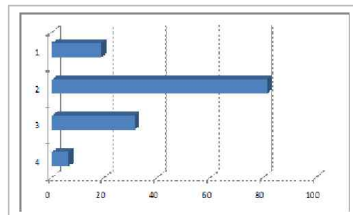


(9) 프로그램 개발 방법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자체로 개발하는 경우가 13개 기관 81.3%, 타 기관 프로그램 도입 활용은 5개 기관 31.3%, 외부 전문가 의뢰는 3개 기관 18.8%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대상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V-61>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방법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외부 전문가의뢰	3	18.8
2. 자체개발	13	81.3
3. 타 기관 프로그램 도입 활용	5	31.3
4. 기타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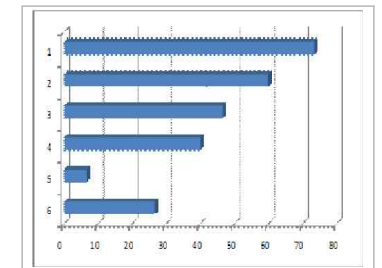


(10) 운영시 애로사항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재정(인건비 및 운영비)부족 73.3%, 교육시설 설비 부족 60%, 전문요원 부족 46.7%, 교육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40% 순으로 나타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표 V-62> 프로그램 운영시 어려운 점(다중응답)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재정(인건비 및 운영비)부족	11	73.3
2. 교육시설 설비 부족	9	60.0
3. 전문요원 부족	7	46.7
4. 교육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6	40.0
5. 감독기관의 과도한 통제	1	6.7
6. 교재개발	4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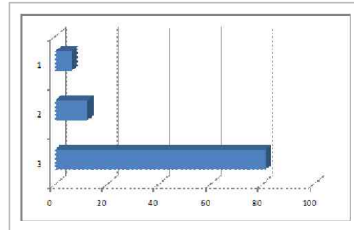
3) 평생교육관련 기관 지원요구 분석

(1)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 장애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적절한 형태는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 결과
 - 혼합형태가 81.3%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리형 12.5%, 통합형 6.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인과 함께하는 완전통합교육,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교육과 같이 한 형태의 교육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장애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되어야함을 암시
 - 장애성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반성인대상 기관에서나 장애인대상 기관 어느 곳이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표 V-63〉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형태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일반인과 함께하는 평생교육(통합형)	1	6.3
2.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분리형)	3	12.5
3. 혼합형태	13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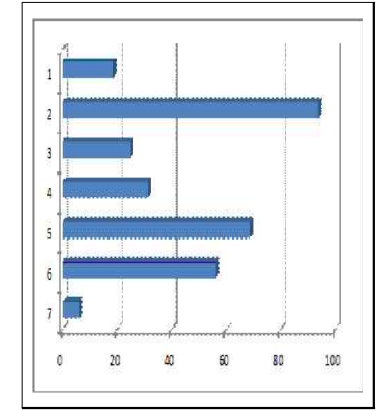


(2)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직업교육 93.8%, 여가교육 68.8%, 자립생활 56.3%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직업교육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앞서 장애성인의 요구조사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장애인과 기관담당자간의 견해 차이를 보임

〈표 V-64〉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다중응답)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문해교육	3	18.8
2. 직업교육	15	93.8
3. 교양교육	4	25.0
4. 정보교육	5	31.3
5. 여가교육	11	68.8
6. 자립생활	9	56.3
7. 기타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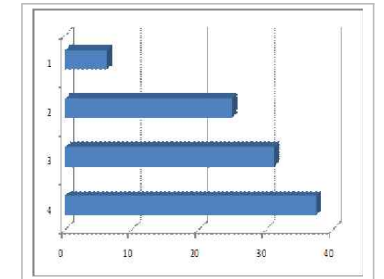


(3)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 장애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1년 이상이 37.5%, 6개월-1년 미만 31.3%, 3-6개월 미만이 25%, 3개월 미만 6.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V-65〉 프로그램 1강좌당 적절한 운영기간 요구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3개월 미만	1	6.3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	25.0
3. 6개월 이상-1년 미만	5	31.3
4. 1년 이상	6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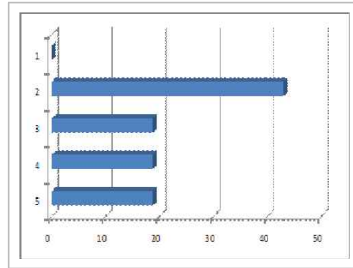


(4)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당 운영 횟수

-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한 주당 몇 회가 적당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2회 43.8%로 가장 선호하였고, 3회 4회 5회가 각각 18.8%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V-66> 주당 적절한 운영 횟수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1회	0	0
2. 2회	7	43.0
3. 3회	3	18.8
4. 4회	3	18.8
5. 5회	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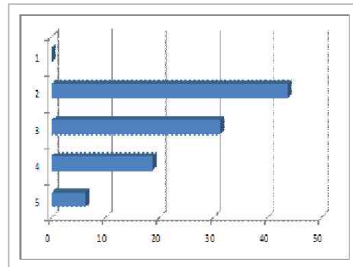


(5) 1일 운영시간

-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1일 운영시간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2시간이 7개 기관으로 43.8%로 가장 선호하였고, 3시간 31.3%, 4시간 18.8%, 5시간 6.3% 순으로 나타나,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V-67> 1강좌당 적절한 1일 운영시간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1시간	0	0
2. 2시간	7	43.8
3. 3시간	5	31.3
4. 4시간	3	18.8
5. 5시간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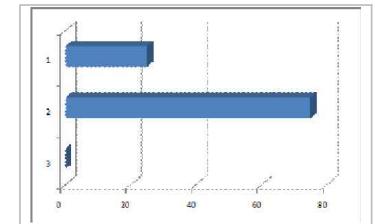


(6) 월 교육비

- 장애성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월 교육비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 월 5만원 미만 12기관(75.0%)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무료 25.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월 교육비는 5만원 미만으로 계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표 V-68> 적정 교육비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무료	4	25
2. 월 5만원 미만	12	75
3. 월 5만원-10만원 미만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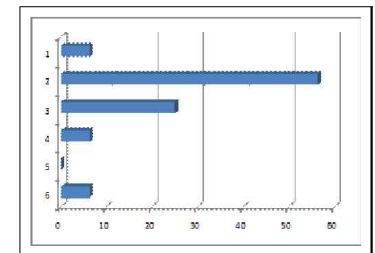


(7) 강사들이 소지해야 할 자격

-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소지해야 할 자격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우선 문해교육의 경우, 교사 56.3% 사회복지사 25.0% 순으로 나타나, 교사 자격을 소유한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표 V-69> 문해교육강사 소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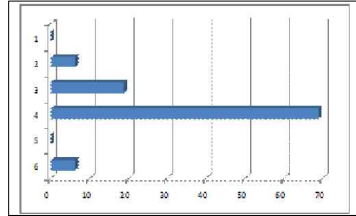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사	1	6.3
2. 교사	9	56.3
3. 사회복지사	4	25.0
4. 국가기술자격	1	6.3
5. 민간기술자격	0	0
6. 기타	1	6.3



-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국가기술자격 68.8%, 사회복지사 18.8% 순으로 나타나,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한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표 V-70> 직업교육강사 소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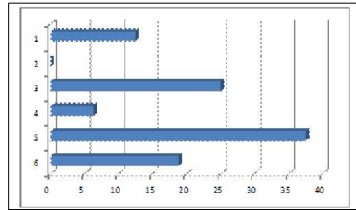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사	0	0
2. 교사	1	6.3
3. 사회복지사	3	18.8
4. 국가기술자격	11	68.8
5. 민간기술자격	0	0
6. 기타	1	6.3



-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기술자격 37.5%, 사회복지사 25.0% 순으로 나타나, 민간기술자격을 소유한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표 V-71> 교양교육 프로그램강사 소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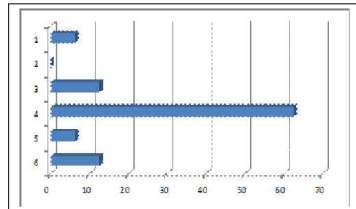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사	2	12.5
2. 교사	0	0
3. 사회복지사	4	25.0
4. 국가기술자격	1	6.3
5. 민간기술자격	6	37.5
6. 기타	3	18.8



- 정보교육 프로그램은 국가기술자격이 62.5%로 나타나,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한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표 V-72> 정보교육강사 소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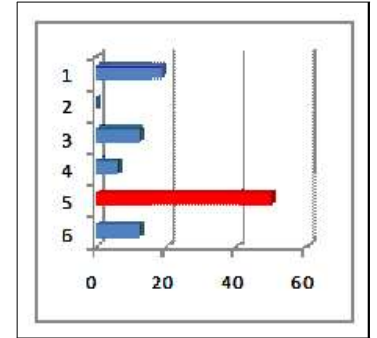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사	1	6.3
2. 교사	0	0
3. 사회복지사	2	12.5
4. 국가기술자격	10	62.5
5. 민간기술자격	1	6.3
6. 기타	2	12.5



-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민간기술자격 50.0%, 평생교육사 18.8% 순으로 나타나, 민간기술자격을 소유한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표 V-73> 여가교육강사 소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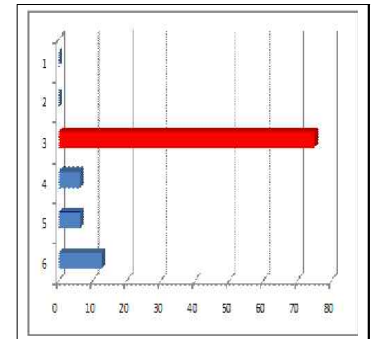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사	3	18.8
2. 교사	0	0
3. 사회복지사	2	12.5
4. 국가기술자격	1	6.3
5. 민간기술자격	8	50.0
6. 기타	2	12.5



- 자립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75.0%, 기타(직업재활사) 12.5%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74> 자립교육프로그램강사 소지자격

문 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사	0	0
2. 교사	0	0
3. 사회복지사	12	75.0
4. 국가기술자격	1	6.3
5. 민간기술자격	1	6.3
6. 기타	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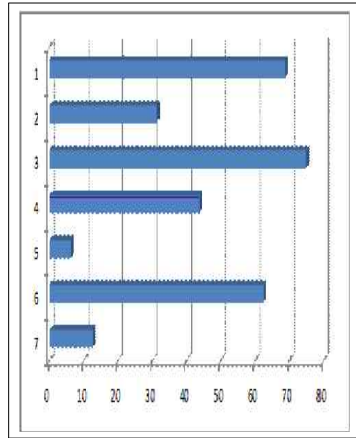


(8) 장애성인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 장애성인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75.0%,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확대 설치 68.8%,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 62.5%, 강사의 전문성 확보 43.8%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이 확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과 교육비지원, 강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V-75> 장애인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확대 설치	11	68.8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	31.3
3.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	75.0
4. 강사의 전문성 확보	7	43.8
5. 교육비 지원	1	6.3
6.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	10	62.5
7.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	12.5



(9)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설립 필요 여부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설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결과
 - 필요하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남
 - 일반성인과 장애성인대상 기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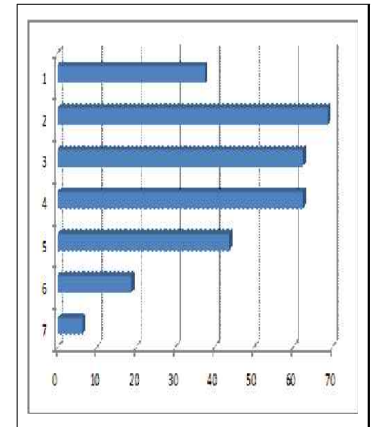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함

(10)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중점기능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 장애 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개발 및 보급 68.8%, 장애 특성별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이 각각 62.5%,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43.8%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장애 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개발 및 보급을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하고 있고, 다음으로 장애 특성별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요구함

<표 V-76> 장애인성인교육 전문기관의 중점수행 기능(다중응답)

문항	기관수	구성비
1.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6	37.5
2. 장애 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개발 및 보급	11	68.8
3. 장애 특성별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	10	62.5
4.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	10	62.5
5.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7	43.8
6.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내 요구 조사	3	18.8
7. 기타	1	6.3



제 6 장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제1절 지원체계 구축

제2절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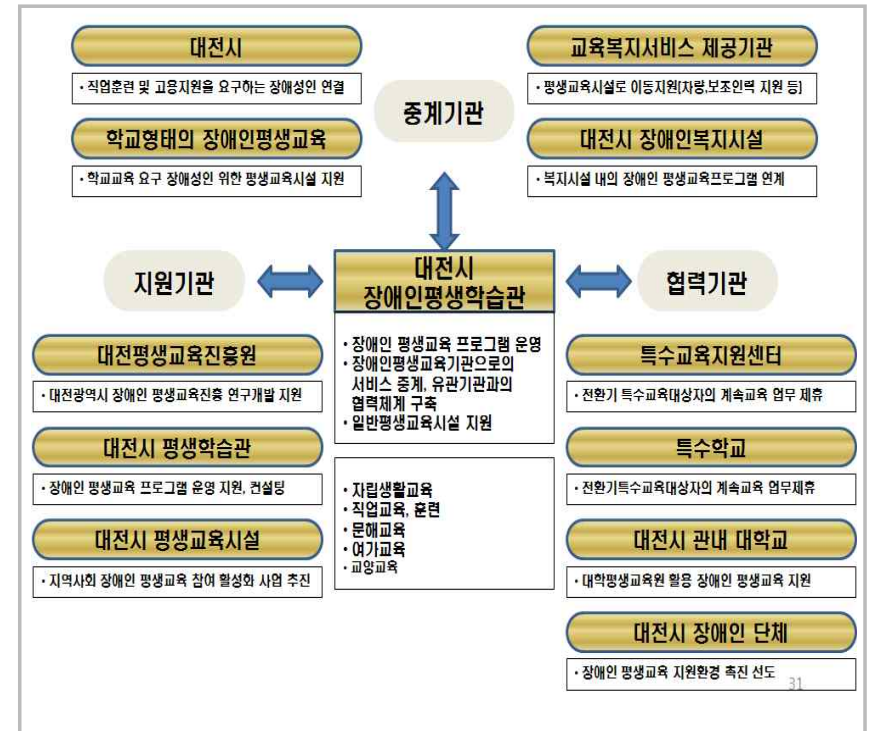
제 6 장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그림 VI-1>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모형

제1절 지원체계 구축

1.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앞선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 첫째, 일반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지원'에 관한 방향이나 정책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평생교육진흥원에 장애인을 위한 소속부서 및 장애인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둘째, 장애영역에 관한 교육적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연구를 진행 중인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학령기 내의 장애인에 관한 연구 및 지원책은 활성화되었지만 학령기이후의 장애성인을 위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임
- 또한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을 둘러싼 부모 및 가족 등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에 부응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재정립이 시급한 현실에서 아직도 일반평생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 등의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교육부 등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정책 활용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다 광의적 차원의 평생교육의 목적 실현과 '장애' 라는 특수목적 대상인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들의 협력적 연계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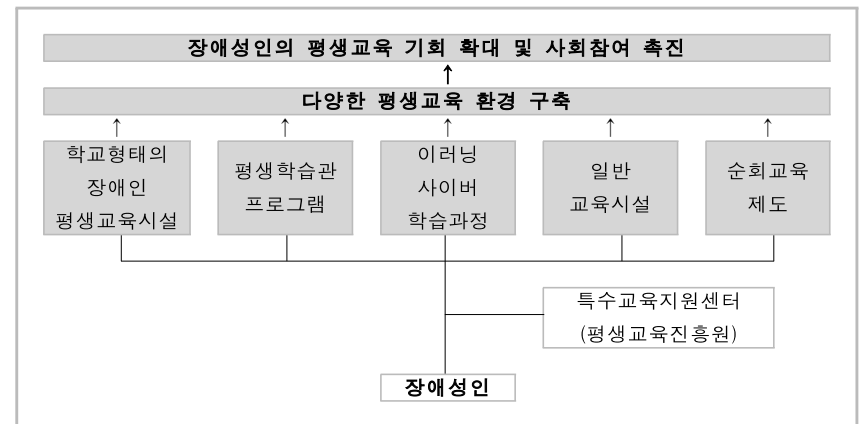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이 설립 운영된다면,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적극 연계하여 자원들을 활용할 수 필요가 있음
 -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등 향후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의 주된 이용자가 될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교육기관과의 적절한 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주로 학령기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향후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은 학령기 이후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평생학습관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생애주기별로 장애인 교육지원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 지원 체계를 하나의 안내자료로 작성하여 주민들과 장애인들에게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특수학교를 비롯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졸업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계속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전환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의 졸업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제공받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얻기를 원할 때,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그 이용 절차에 대해 사전에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 대전광역시의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에게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캠퍼스 생활 체험 등을 제공할 수도 있음. 특히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보다 다양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2.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 대전광역시의 장애성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육성
 - 사이버 학습과정 설치
 - 일반학교 또는 일반 평생교육시설(문해교육기관) 활용
 - 대전평생학습관 내 프로그램 개설
 - 기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의한 순회교육 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음

〈그림 VI-2〉 다양한 기능의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모델



- 이와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성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하며, 충분한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치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교육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를 중재하거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를 전달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별도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함

3.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조례)의 제정

1) 기존 법률 개선요청

- 현행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의 법률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학습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평생교육사업을 운영(려)는 장애인 유관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다만,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본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는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의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다만 여기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정을 학교교육 과정으로 국한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령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전시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에 이를 명시하도록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2) 별도의 조례제정

-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미 대전광역시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대전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및 조례 시행 교육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다만, 기존에 일반 평생교육 관련 조례와 새롭게 제안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일반 평생교육 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특히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서는 물리적 장벽, 경제적 부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달 체계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였음
-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시행 교육규칙 제정은 꼭 필요함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관(이하 “장애인평생학

습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지정·운영)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및 단체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탁) 시장이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애인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중사자에 대한 연수
 3.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장애인 평생학습의 상담
 4.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보급
 5. 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변장장애·중복장애 등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6. 일반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상담, 교육, 연수 지원
 7. 기타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평생학습관으로 위탁하거나 지정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징수) 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강사료, 교재대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운영

1) 건립의 타당성

- 장애인평생교육의 경우 학령기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의 교육차별 해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함에 비해 앞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관이나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너무 부족한 상황임

<표 VI-1> 프로그램개설과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방안 장, 단점 비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 평생학습관, 복지관의 타 프로그램 정보접근 및 이용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학습과정 개설을 통해 장애성인 개별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며 각 과정별 반복학습, 연계학습, 진급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완결된 교육 가능 - 장애성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전문성 확보 용이 - 등하교 이동편의 제공이 가능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보조, 활동보조, 생활케어등 교육외적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학생수가 시설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학생모집에 적극적이고 프로그램중심의 학생모집이 아닌 시설중심의 학생모집이기 때문에 폐강의 걱정이 없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성인 개별에 맞춘 프로그램 개설 및 초,중,고 교육의 체계적 연계 어려움 - 등하교 이동편의 제공이 안됨 - 복지관의 유휴공간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 프로그램 일부 폐지 또는 조정 필요 - 복지관 직원이 학과목을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교육인력 확보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교육을 위한 보조공학 장비 등 추가 설치 필요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보조, 활동보조, 생활케어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단순홍보를 통한 소극적 학생모집으로 학생확보가 어렵고 모집인원이 적을 경우 실적등을 고려 폐강되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및 강사 확보, 교육공간 시설비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예산이 많이 필요함

- 복지관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실적에 따라 프로그램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학력보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이라는 측면보다는 재활과 복지에 근거한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의 학령기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시

설에서 전담토록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설하는 방안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인력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법령 및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은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구축,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별도의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업무 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1) 운영목표

- 기존의 일반평생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함
- 학교교육 이후 전환기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지역사회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마련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장애성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를 제공함
- 장애성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장애성인도 대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 장애성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독립생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장애성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하게 평생학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장애인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장애인당사자를 존중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문화를 조성함

2) 조직 구성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의 조직은 종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기획연구팀, 프로그램운영팀, 사례관리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되는 방안을 제안함
 - 행정지원팀은 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함
 - 기획연구팀은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담당
 - 프로그램 운영팀은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 사례관리팀은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와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 및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자원을 중재하여, 가장 적절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그림 VI-3> 장애인평생학습관 조직도(안)



- 이와 같은 조직 구성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교수학습 연구 개발 업무,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 학습 지원 업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운영팀이 분화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조직 구성은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수요와 기관의 운영 역량, 운영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3) 주요 업무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은 직접 프로그램 운영, 중계업무, 지원업무, 협력 업무 등 크게 4가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함

(1) 직접 프로그램 운영

-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접 운영함

<표 VI-2>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용

구분	내용
문해교육	-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능력 강화교육 - 전문적 직업기술의 획득과 기술개발 및 의식함양, 정치·경제 및 시민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지식, 정보의 보유 능력등을 갖추기 위한 교육 포함
자기개발교육	-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문화예술교육, 심성개발교육 등 지식정보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
직업교육	- 직업 관련 정보 제공, 취업의 기초 지식 습득 교육, 직업 생활 적응 훈련, 직업 기능 전문 교육, 직업 체형(인턴쉽) 프로그램 등
교양교육 (시민성교육)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고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 인권존중 의식과 행동의 일상화, 토론문화와 협상문화의 정착, 공동도덕과 시민질서의 회복, 건전한 소비의식과 행태의 정착,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제공하는 교육
자립생활운동	- 자립생활서비스(예, 활동보조서비스 등) 이용 교육, 자립생활기술훈련교육(쇼핑, 돈 관리, 보행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들을 교육

(2) 중계 업무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 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평생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담당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중계하는 역할 수행
- 앞선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이를 어디서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음
-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기관 역시 장애인 수요자를 찾지 못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안에서의 장애인들의 장

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기관을 연결하는 중계 업무가 필요한 실정임

-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여러 유형의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VI-3> 대전광역시 소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구분	제공 기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야학 5개소, 등
장애인 지역사회이용시설	대전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청 관할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 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대전광역시장애인도우미뱅크, 대전광역시장애인심부름센터 등 보조인력 및 이동지원 기관

- 위의 표에서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서비스(Related Service)를 제공하는 기관과도 연계가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동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편의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적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지원 업무

- 지원 업무는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말함
-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이러한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일반 평생교육시설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4) 협력 업무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이 대전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제2절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1.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제공

- 기존의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이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집한 다음, 비용을 수납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성인의 경우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
 -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고 그 기능적 특성을 확인한 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사정 절차 (Assessment Proces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담당하는 조정자(Coordinator)가 필요한데,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또는 특수교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정 절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Ⅶ-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정 절차



2. 장애인 평생교육 비용의 지원 및 지불 방식

- 현재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부 소외계층의 경우에 한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무상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일반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실제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되도록 개인 부담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그 비용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가정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 발생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개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 또는 현금을 지급하여 이것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직접 바우처 제공 방식),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에 직접 비용일 지불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간접(목시적) 바우처 제공 방식).
 - 최근 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되면서 평생교육에서도 바우처 방식의 비용 지불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비용 지불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 도입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음
- 바우처 제공 금액의 경우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평균 제공 단가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 등을 바탕으로 비용을 책정하여야 함
 - 또한 1인당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도 정하여 본인부담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원칙에 따라 부담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시설이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도록 장려
-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인건비(강사비), 사업비 등 충분한 예산을 지원
 - 예산 지원 가능한 범위를 확정하여 항목 조정 : 시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항목을 조정하고, 예산 지원의 기준 마련
- 통학 차량 등 이용자의 통학비 지원
 - 늦은 하교 시간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중교통의 한계로 많은 위험(리프트 고장,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음
 - 시설까지의 접근에 오랜시간이 걸리며 택시이용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보조 인력 제공
 - 학습자의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어서 대필, 신변처리 등 활동보조인이 필요함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특수교육보조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지침 수정하고 유급특수보조원을 2인 이상 배치한다
 - 보조인력 1인당 연간 1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성인의 특성에 적합화된 학교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현행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장애성인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 탄력적이면서도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능
 - 다만, 보다 공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나고, 장애성인들의 실제 문해능력 신장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

된 장애인 학교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고, 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며, 장학지도 등 관리·감독 지원 환경도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 주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중장기 장애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하며, 전문인력을 배치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향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의 승격 여부 검토
- 학력 인정의 취득 여부는 학교로서의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었는가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여건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력인정 시설로의 승격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성인이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중 검정 체계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 관리 업무 및 전달체계 정비

-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일반 평생교육관련 업무는 지자체의 업무로 전환된 상황임. 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에는 장애인 평생교육도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음. 이에 따른 혼선으로 현재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청 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관리 업무 및 전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과 지원 등의 업무 담당의 혼선으로 인해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이와 같은 업무를 특수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교과부와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청의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지원의 경우 편의시설 지원, 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평생학습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활용 등 기존의 특수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시교육청, 시청 어느 일방의 전담업무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의 체계적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제2절 정책 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36.7%, 강사의 전문성 부족 26.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미비 20.0%, 교육비 부담 13.3% 순으로 나타남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성인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참여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평생교육관련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됨
-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지원욕구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양적조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또한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1.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1회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86.0%,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14.0%로 나타남
 -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기관으로 장애인 단체 32.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 21.4%, 일반인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각각 14.3% 순으로 나타남
 -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직업교육 48.3%, 여가교육 31.0%, 정보교육 27.6%, 문해교육 20.7%, 자립생활 17.2%, 교양교육 10.3% 순이었음
-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80.0%,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기관의 부족 66.7%, 이동의 어려움 46.7%,

2.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 장애성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혼합형태 81.3%, 장애성인만 대상으로가 12.5%, 일반인과 함께가 6.3%로 나타남
-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직업교육 93.8%, 여가교육 68.8%, 자립생활 56.3% 순으로 나타남
- 직장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년 이상이 37.5%, 6개월-1년 미만 31.3%, 3-6개월 미만이 25%, 3개월 미만 6.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주당 운영횟수는 2회 43.8%로 가장 선호하였고, 3회 4회 5회가 각각 18.8%로 동일하게 나타남
- 1일 운영시간은 2시간이 7개 기관으로 43.8%로 가장 선호하였고, 3시간 31.3%, 4시간 18.8%, 5시간 6.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성인이 부담해야 할 월 교육비로는 월 5만원 미만 12기관(75.0%)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무료 25.0% 순으로 나타남

3.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장애인 본인(93.8%), 장애인평생교육기관(100.0%)로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높게 나타남
- 또한 향후 이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할 주된 기능에 관해서도 이들 모두 “장애특성별 프로그램 수집 개발 및 보급”을 우선적인 과제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2절 정책 제언

-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 및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함

1.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1)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뿐만아니라, 대전광역시 관련기관간 보다 광의적 차원의 평생교육의 목적 실현과 ‘장애’ 라는 특수목적 대상인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들의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토록 함
- 건립이 필요한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광범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2)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축

-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성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하며, 충분한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치 절차 마련

3)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조례) 제정

-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4)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장애인평생교육 전담기구로 설치
-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학습관은 직접 프로그램 운영, 중계업무, 지원업무, 협력 업무 등 크게 4가지의 역할을 담당
- 장애인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2.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1)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제공

-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필요
-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고 그 기능적 특성을 확인한 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 마련
- 사정 절차 (Assessment Process)를 담당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 평생교육 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또는 특수교사를 양성 배치

2) 장애인 평생교육 비용의 지원 및 지불방식 개선

- 직접 바우처 제공방식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 또는 현금을 지급하여 이것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안
- 간접(목시적) 바우처 제공 방식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에 직접 비용일 지불하는 방안

3)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성인 교육시설이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도록 장려
-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인건비(강사비), 사업비 등

4)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관리 업무 및 전달체계 정비

- 교과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시청의 장애인평생교육 업무 체계의 정비가 필요
- 시교육청, 시청 어느 일방의 전담업무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의 체계적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권대봉 (2007). 공공정책으로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학연구, 13(4). 한국평생교육학회.

김남진·박재국 (2007). 특수교육 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1(4), pp. 215-234.

김동주 (20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7(2), pp.99-120.

노중채(2007).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중채, 장우권(2006). 장애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문경도(2006) 장애인가족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숙(2005).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은혜 외 3인(2007).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 E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Vo.14, No.1)

설진화 (2009). 지적장애인 직업유지의 영향요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직업재활연구, 19(1), pp. 75-96.

여수일(2005).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집문당

우정환·이희광 (2009). TIE 활용 직업교육이 정인지체학생의 직업준비기능 및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10(1), pp. 159-180.

이효성 외 (200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직업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 개발연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연구, 52(1), pp. 195-216.

장원동·윤영란(2008). 평생교육의 이해. 동문사

장지혜(2007). 정인지체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정인숙 외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정인숙 외 (2008).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9(4), pp. 349-366.

정해동, 이성봉(2007).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연구(Vol.14, No.1)

한상길 (2009). 평생교육론. 경기: 공동체

부 록

부록 1. 대전시 장애인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설문지(장애인용)

부록 2. 대전시 장애인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설문지(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용)

1. 일반사항

1. 귀하(장애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세

3. 귀하(장애자녀)의 주된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지적장애 |
| ⑦ 발달(자폐)장애 | ⑧ 정신장애 | ⑨ 신장장애 |
| ⑩ 심장장애 | ⑪ 기타_____ | |

4. 귀하(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5. 귀하(장애자녀)는 최종 졸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중퇴 | ③ 초등학교 졸업 |
| ④ 중학교 중퇴 | ⑤ 중학교 졸업 | ⑥ 고등학교 중퇴 |
| ⑦ 고등학교 재학 | ⑧ 고등학교 졸업 | ⑨ 대학교 중퇴 |
| ⑩ 전공과 재학 | ⑪ 전공과 졸업 | ⑫ 대학교 재학 |
| ⑬ 대학교 이상 졸업 | ⑭ 기타_____ | |

부록 2. 대전시 장애인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설문지(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용)

I. 운영실태

1.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평생학습관 ② 부설 평생교육시설 ③ 사회복지관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시설, 판매시설, 직업훈련시설)
⑤ 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 자립생활센터, 공동가정생활 등)
⑥ 장애인복지관
⑦ 기타_____

2.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해교육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 교육)
② 직업교육 (공업·상업·농업 등의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생활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육)
③ 교양교육 (전문적인 전공교육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학·어학·철학·미술·역사 등의 분야와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에 관한 교육)
④ 정보교육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교육)
⑤ 여가교육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한 교육)
⑥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기결정, 자기주장, 기초생활훈련, 자기관리, 은행·금전관리기술, 요리, 육아 등에 관한 교육)
⑦ 기타_____

3. 일반적으로 성인교육 프로그램 1강좌의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④ 1년 이상
⑤ 기타_____

4. 성인교육 프로그램 1강좌당 하루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 ⑤ 5시간 ⑥ 6시간 이상

14. 장애성인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만 선택)

- ①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확대 설치
-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③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④ 강사의 전문성 확보
- ⑤ 교육비 지원
- ⑥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
- ⑦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⑧ 기타 _____

15. 귀하는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평생(성인)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15-1번 문항 응답)
- ② 아니오

15-1.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설립이 필요하다면, 이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 ()

- 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 ② 장애 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집·개발 및 보급
- ③ 장애 특성별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
- ④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현장자문 및 기술적 지원
- ⑤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 ⑥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내 요구 조사
- ⑦ 기타 _____

I. 일반사항

1. 성인교육 프로그램 기관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사단법인 또는 복지법인
- ③ 민간·사설기관 ④ 기타 _____

2.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연령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세 이상~30세 미만
- ③ 30세 이상~40세 미만 ④ 40세 이상~50세 미만
- ⑤ 50세 이상

3.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명 미만 ② 20명 이상~40명 미만
- ③ 40명 이상~60명 미만 ④ 60명 이상~80명 미만
- ⑤ 80명 이상~100명 미만 ⑥ 100명 이상

정책연구보고서 2011-12

장애인평생학습 활성화방안 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8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〇〇〇〇〇 TEL 042-〇-〇 FAX 042-〇-〇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